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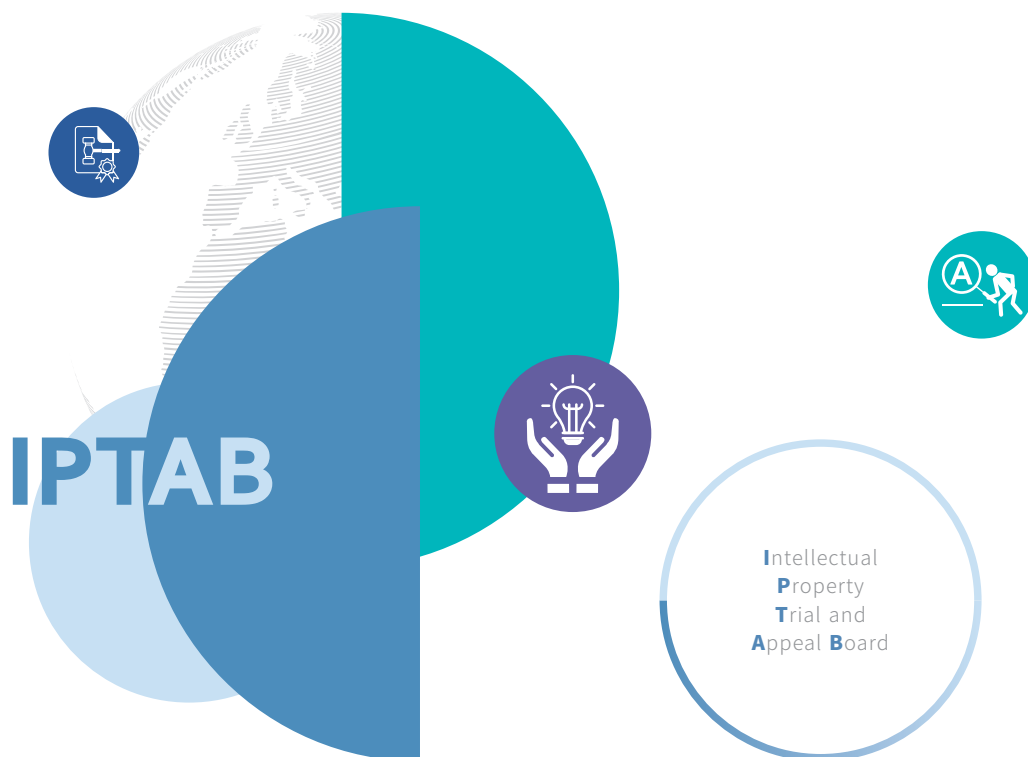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815-14



2022 구술심리 매뉴얼

2021. 12.





2022 구술심리 매뉴얼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일러두기

1. 이 매뉴얼은 특허심판원에서의 구술심리, 증인신문 등의 진행 절차와 관련된 일반 규정 및 서식을 수록하고 실제 구술심리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제 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2. 이 매뉴얼은 2021. 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심판 관련 훈령·예규·편람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이 매뉴얼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판사무취급규정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심판관련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는 본 매뉴얼을 법령해석 등의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매뉴얼에서 사용된 약어의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	상표법	특시칙	특허법시행규칙
상시령	상표법시행령	실	실용신안법
상시칙	상표법시행규칙	실시령	실용신안법시행령
디	디자인보호법	실시칙민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디시령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민	민법
디시칙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민소	민사소송법
특	특허법	민소규	민사소송규칙
특시령	특허법시행령		

CONTENTS 목 차

제 1 장

심판과 구술심리

제1절 구술심리 일반	9
1. 정의	9
2. 개최요건	9
3. 범위	10
4. 기능	11
5. 내용	13
6. 법적지위	15
7. 개최방식 및 장소	16
8. 방청신청	21

제 2 장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25
1. 신청서 접수	25
2. 개최여부 결정	25
3.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 안내	26
4. 쟁점심문서 통지	26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27
6. 기일의 변경	28
7. 기일의 취소	30
제2절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32
1. 개정	32
2. 개시선언	32
3. 참석자 확인	32
4. 주의사항 안내	33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34

CONTENTS 목 차

6. 청구인의 진술	36
7. 피청구인의 진술	36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37
9. 심판장의 심문	37
10. 상대방의 진술	38
11. 추가 질문	38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38
13. 폐정	38
14. 구술심리 시나리오(특허)	39
15. 구술심리 시나리오(상표)	44
16. 심판정 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0

제 3 장

증인신문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53
1. 의의	53
2. 증인능력	53
3. 증인의 의무	54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55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55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56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56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 통지	57
5. 증인신청서부분 송달	57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57
7. 반대신문사항 제출	58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	58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	59

CONTENTS 목 차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61
(1~10은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 진행절차와 동일)	
3. 참석자 확인	61
11. 증인신문 개시	61
12. 증인 확인	62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62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63
15. 증인신청인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63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64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64
18. 증인신문 종료	64
19. 구술심리 재개	65
20. 기일지정 또는 심리종결의 예고	65
21. 폐정	65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66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73
1. 심판장의 지휘	73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73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74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5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75
6. 당사자의 증인신문	75
7. 재정증인	75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76
9. 증인신문의 순서	76
10. 증인신문의 요령	77

제 4 장

구술심리 기일의 종결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81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81

CONTENTS 목 차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87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87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87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복사	88

제 5 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91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91
3. 증인의 불출석	91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출석	92
5. 통역	92
6. 당사자신문	93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94
8. 참가인	95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96
10. 병합사건	96
11. 구술심리에서의 심판-조정 연계	96
12. 검증	97
13. 심판정 외 현장검증 장소 등에서 개최하는 구술심리	98
14.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	99
15.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심판사건 설명회	100
16. 다자간 전화 심판사건 설명회 시나리오	101

별첨

1. 구술심리 관련 규정	103
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139
3.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173

제 1 장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심판과 구술심리



제1절

구술심리 일반

www.kipo.go.kr/ipt



1

정의

구술심리는 심판의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3인 또는 5인 심판관 합의체(이하 ‘심판부’라 한다) 앞에서 구술공방을 함으로써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는 심리방식을 의미한다.

2

개최요건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는 심결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뿐만 아니라 심판부의 심판운영 및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사실인정 등을 가리킨다. 심리의 방법은 구술에 의한 구술심리와 서면에 의한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리주의로써 그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민소§134). 이에 비하여, 특허법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특§154①)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해 심리하도록 하였다. 행정심판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술심리를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심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양 당사자의 구술공방을 통한 쟁점정리에 의의가 있으므로 당사자제 사건에서 개최된다.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표 1-1. 구술심리 개최 필요성이 높은 사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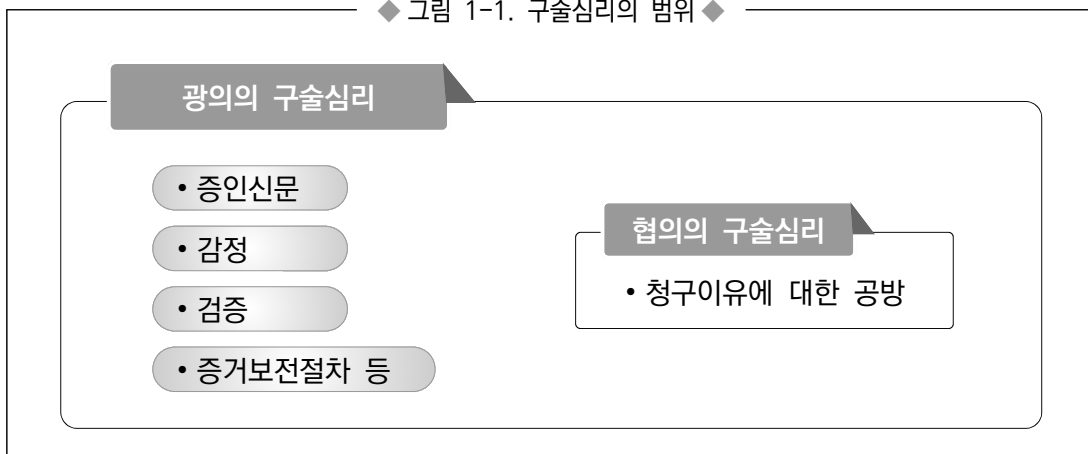
- ①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 ②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③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주장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사건
- ④ 발명 또는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한 사건
- ⑤ 증거조사, 증인신문, 검증을 동반한 사건
- ⑥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2는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심판장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 위

협의를 구술심리 절차는 심판정에서 개최되는 당사자들의 청구이유에 대한 공방만을 의미하나, 광의의 구술심리는 당사자들의 공방 이외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증거보전절차 등을 포함한다. 특히심판원 심판정에서의 구술심리는 당사자들의 청구이유에 대한 공방과 증인신문이 대부분이다.

◆ 그림 1-1. 구술심리의 범위 ◆



4 기 능

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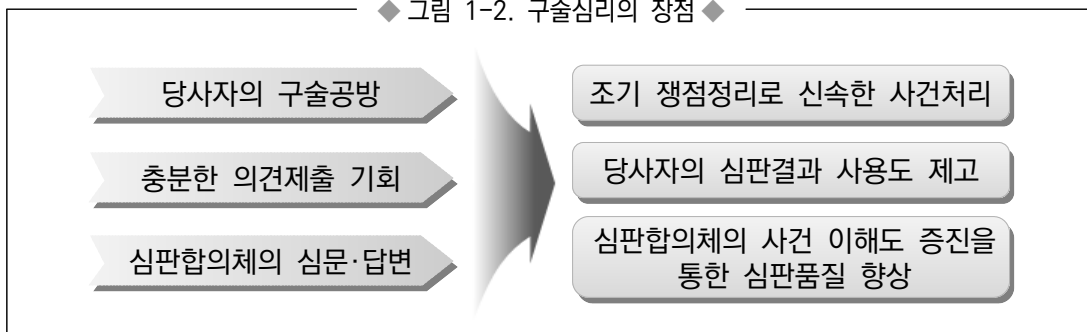
(1) 구술심리의 장·단점

구술심리는 심판관이 당사자·증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즉각적인 반문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여 모순된 사항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 쟁점파악이 용이하고, 파악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구술심리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자도 방청할 수 있어서 심리의 투명성과 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탐지주의에 기초하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술심리에 있어서 심판장이 적극적으로 심리지휘를 하고, 사건에 따라 다양한 검토를 함으로써 최적의 사건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심리는 심판정에 당사자·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복잡한 기술의 경우 구두 설명이 도면과 서면에 의한 설명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진술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유지관리 하는데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그림 1-2. 구술심리의 장점 ◆



(2) 서면심리의 장·단점

서면심리는 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청취하여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으며, 진술내용이 확실하고 그 내용을 보존하고 재확인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나 서면의 작성 및 열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심판기록이 방대해져 쟁점을 찾아 심리를 집중하는데 불편하며, 심판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나. 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의 비교

구술심리와 설명회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심판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① 대상사건 : 구술심리는 당사자제 사건에서 진행되는 데 반해, 설명회는 결정제·당사자제 심판,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사건 모두에서 진행된다.

※ 당사자제 사건의 설명회 개최시에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양방이 참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판관의 참석범위 : 구술심리는 심판부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비해, 설명회는 주심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부 전원이 참석한다.

- ③ 개최장소 : 구술심리는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소재지 심판정에서 개최되는데 비해, 설명회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사건 설명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술심리와 설명회 모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택 또는 사무실 등에서 출석이 가능하고, 구술심리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허심판원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 가능하다.

- ④ 개최방법 : 구술심리와 설명회는 만나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사자 일반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영상(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포함)으로 개최 가능하며, 설명회는 이 외에도 인터넷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진행방식 및 내용 :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공방, 심판부의 심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이 심판장에 의해 엄격한 형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데 비해, 설명회는 당사자의 기술 설명, 심판관의 질의 및 당사자 답변이 형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지휘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

※ 심문(審問)은 당사자에게 권리를 위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체는 심판부이며 주로 진술로 진행되며, 신문(訊問)은 당사자/증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심결을 위한 사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주체는 심판부 및 양당사자이며 일반적으로 문답식으로 이루어진다.

- ⑥ 결과보고 : 구술심리는 심리종결 후, 심판사무관이 일정한 형식의 구술심리조서를 작성하는데 비해, 설명회는 심판관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심판장이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속기록을 첨부한다.

◆ 표 1-2. 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의 비교 ◆

구 분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대상사건	당사자계 심판	결정계·당사자계 심판,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심판관 참석범위	심판부 전원(3인 또는 5인 합의부)	주심심판관 또는 심판부 전원
개최장소	심판정(대전, 서울)	심판사건 설명회장(대전, 서울)
개최방법	대면, 영상(전용망), 영상(인터넷)	대면, 영상(전용망), 영상(인터넷), 전화
진행방식	심판장이 엄격한 형식 하에 진행	주심심판관(또는 심판장)이 자유롭게 진행
진행내용	당사자의 공방, 심판부의 심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 증거보전 절차 등	당사자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설명, 심판관(장)의 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
결과	구술심리조서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참조

5

내 용

구술심리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진술, 피청구인의 답변취지 및 이유진술,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심판부의 심문, 증인신문이 주된 내용이다.

가.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진술과 피청구인의 답변취지 및 이유진술 (본안신청)

본안신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이유에 해당하는 심결을 구한다는 뜻을 진술함으로써 시작된다. 피청구인은 본안신청에 대하여 청구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심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된다.

특허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은

구술심리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유효하므로, 이 절차는 심판장의 지휘 하에 생략될 수도 있다.

나.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공격방어방법)

청구취지를 진술한 후 당사자는 본격적으로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된다. 공격방어방법이라 함은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심판 자료를 말한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하는데, 이를 합하여 공격방어방법이라 부른다.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주장, 부인(否認) 및 증거신청이 주된 것이다.

증거신청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데, 상대방이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 심판부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증거신청은 심판부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증거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하여 각하를 구하거나 증거력이 없으므로 증거조사결과를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의 신속·경제성을 고려하여 통상 구술심리기일에 증거조사절차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 심판부의 심문(審問) 및 신문(訊問)

당사자의 주장 이외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당사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신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 및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심판장이 심문 또는 신문하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당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공지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및 확인대상발명의 공지공용·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심문할 수 있다.
-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가 불분명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청구인에게 확인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들어 실시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③ 증인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사(私)문서라 할지라도 그 성립의 진정성 및 증거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 ④ 발명의 기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배경기술·이론 등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⑤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입증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에게 심문할 수 있다.
- ⑥ 당사자가 필요하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장의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6

법적지위

가. 구술심리의 법적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은, 변론주의에 따라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쳐야하며(민소 §134),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 하에 행해진 구술변론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민소 §204).

이에 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리는 구술심리에 의한 주장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된 주장 또한 전부 유효한 진술로 인정되므로,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는 변론의 인정 여부보다 증거조사, 쟁점사항에 대한 심문 및 정리, 복잡한 기술에 대한 신속한 이해 등에 의의가 있다.

나. 조서의 증명력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구술심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민소 §158). 조서에 기재가 있으면 그 사실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서에 기재가 없으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조서는 관계인(대리인·참가인 등, 증인·감정인도 자기의 증언이나 감정의견에 관한 관계인이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원은 이를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민소 §157).

구술심리 진술의 내용, 증인의 선서와 진술내용 등은 법정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

하며 증거가 되는데 그친다. 다만 조서는 엄격한 형식 하에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 구술심리의 조서작성 및 조서기재사항 → 제4장 2 참조

7 개최방식 및 장소

가. 일반적인 구술심리

일반적으로 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최한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은 특허심판원 본원(정부대전청사 소재)에 심판정 1~3과 대심판정, 상디심판부가 위치한 대전 별관에 소심판정과 대심판정,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 영상심판정이 있다

심판정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각의 좌석에 빔프로젝터와 연결된 노트북이 제공된다.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당사자는 진술자료를 USB에 담아오거나, 직접 가져온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화면을 보여주면서 진술할 수 있다.

◆ 그림 1-3. 일반심판정의 구조예시 ◆



나. 원격영상구술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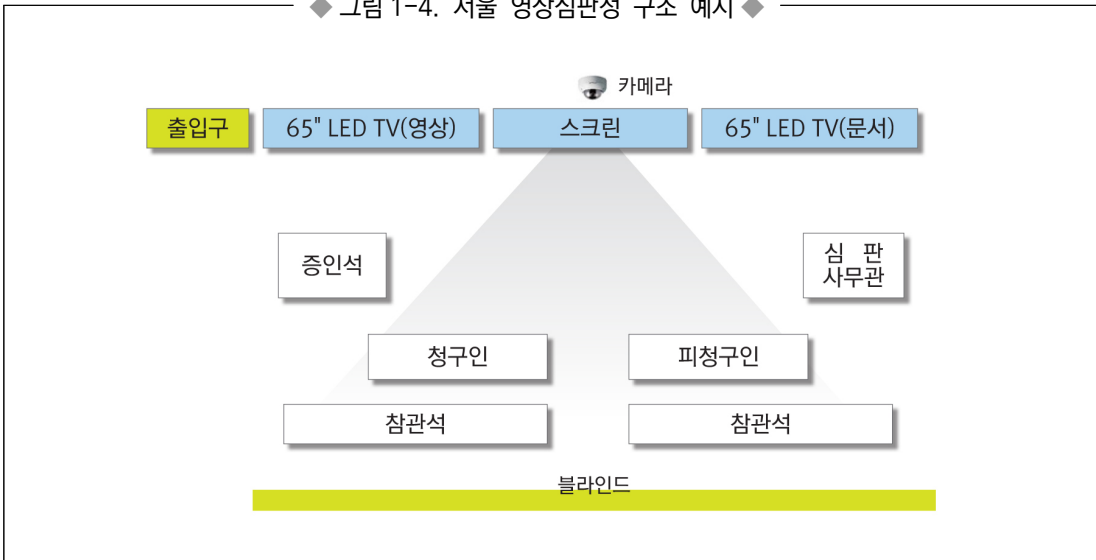
구술심리는 심판관이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신속·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전 이외 지역의 심판당사자들이 대전으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지의 심판정 간 전용망을 통해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가 2014년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원격영상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본원의 대심판정(대전) 또는 별관 상표디자인부의 소심판정과 영상심판정(서울)을 연결하여 진행한다. 이때 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대심판정 또는 상표디자인부 소심판정에 출석하고 심판관계인은 대심판정, 상표디자인부 소심판정 또는 영상심판정(서울)에 출석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한다. 영상구술심리의 지원 및 진행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영상구술심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서울의 영상심판정에 출석한 심판관계인의 참석자 확인, 구술심리진술요지서의 스크린 투영, 실물화상기 등 장비 조작 및 심판정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술심리 진행 방식은 일반 구술심리와 동일하며, 당사자와 심판부 간에 영상 장치를 통한 실시간 진술 및 공방, 실물화상기를 이용한 증거물품의 확대 및 자료의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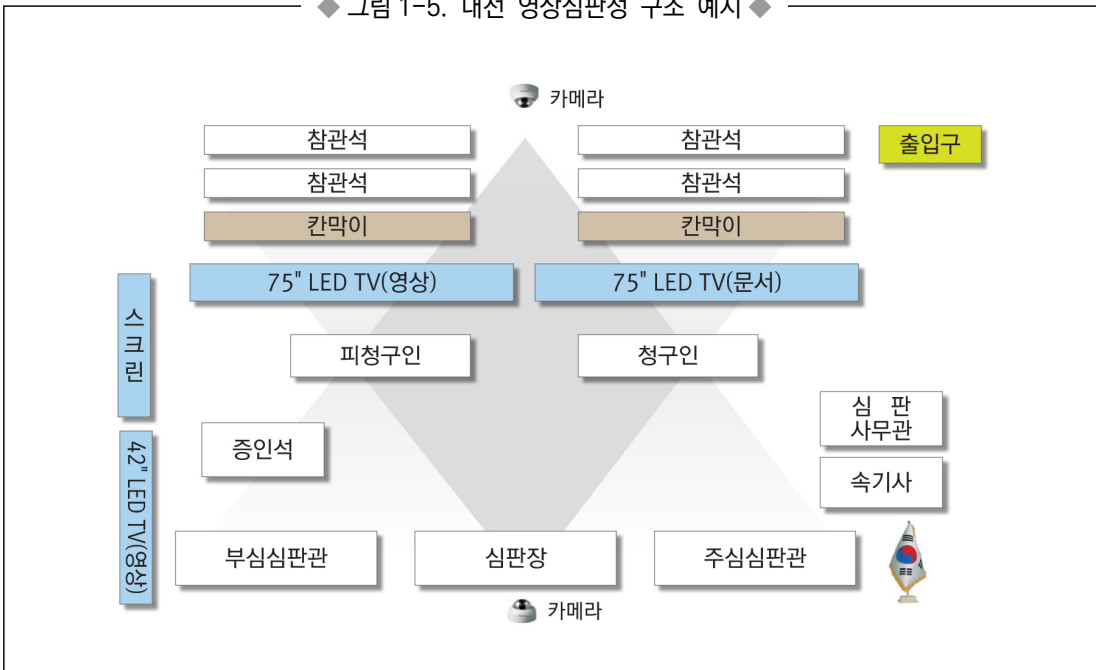
원격영상구술심리는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사건 ㉡ 상표·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39의4). 다만, 기술이 복잡하고 사건의 쟁점이 많아 공방이 예상되는 구술심리, 증거물품의 작동 방법 시연 등 심판정 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구술심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한다.

◆ 그림 1-4. 서울 영상심판정 구조 예시 ◆



◆ 그림 1-5. 대전 영상심판정 구조 예시 ◆



다. 인터넷 구술심리

당사자 등 심판관계인이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1.8월부터 인터넷 구술심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양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참석에 동의한 공개 사건에 한하여 인터넷 구술심리 개최가 가능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PC(노트북 포함), 웹카메라,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 상에 개설된 회의실(심판정)에 출석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고, 구술심리 진행방식은 일반 구술심리와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등이 진술, 답변 시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에서 발표자료 공유 등을 직접 조작하여야 하므로, 접속방법 등 시스템 매뉴얼은 기일 전에 참석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한다.

인터넷 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조서 기재, 속기와 관련해서는 원격영상구술심리와 동일하다.

라.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일반적인 심판사건과 달리 5인 심판부 합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5인 심판부 사건으로 선정하고 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을 5인 심판관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표 1-3. 5인 합의체 구술심리 개최 필요성이 높은 사건 ◆

- ①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 ② 법률적·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 ③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 ④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 ⑤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 ⑥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 ⑦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

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 ⑧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 ⑨ 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 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에서는 ① ~ ⑨에 대해 원칙적으로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특허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의 구술심리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사건신청서(특시칙 별지 33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1 서식)의 '신청의 이유'란에 다음 ① 내지 ⑤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 §39조의3).

- ① 심판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②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③ 심판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④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⑤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방청신청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므로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청할 수 없다(특§154③).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술심리기일 전에 심판정책과에 방청을 희망하는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일시, 방청사유 등을 알려야 하며, 심판부는 심판정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 인원의 수를 제한하거나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39조의2④⑤).

심판정책과는 심판부의 방청 허용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술심리기일 전에 그 결과를 회신한다. 구술심리기일에 방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정 10분 전까지 출석한다.

제2장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www.kipo.go.kr/ipt



1

신청서 접수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사건 신청서(특시칙 별지 3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1 서식)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시칙§65①). 특히 기술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증거물품의 작동 방법 시연 등 심판정 내 검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 란에 “사건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부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심판의 진행을 위하여 특허법 제 154조제1항에 의한 구술심리(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또는 인터넷 구술심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격 영상(또는 인터넷)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신청서를 통해 원격 영상(또는 인터넷)이나 전화 설명회를 신청할 수도 있다.

2

개최여부 결정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에 의하여 구술심리의 개최여부를 판단한다.

당사자의 구술심리 신청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심판장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2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2-5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3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구술심리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행하

는 경우에는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 안내

구술심리를 개최할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특§154④). 구술심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심판정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을 확정한다. 심판정의 사용가능 여부는 심판시스템(특허넷 심판정/회의실 예약)에서 확인한다. 심판장은 정해진 구술심리기일, 개정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2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4 서식)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일의 3주 전에는 발송하여 당사자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장은 당사자가 구술변론을 할 내용을 정리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구술심리기일 전에 제출하여 심판부와 상대 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기일통지서에 진술요지서 제출기한을 함께 안내한다.

4 쟁점심문서 통지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될 심문사항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구술심리 쟁점심문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2-4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5 서식)를 통지할 수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40의②).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가. 참석자의 구술심리기일 준비

1) 구술심리진술요지서 제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당사자의 주장, 주요 증거의 요지 등 구술변론을 할 내용을 정리하여 구술심리진술요지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9 서식)를 심판부가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술심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진술요지서 제출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 구술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구술심리 당일 구비서류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구술심리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정 10분 전까지 출석한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특허 등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당사자와 친족 관계, 고용계약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소속 직원 등이 사건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심판장의 허락 하에 그 부분만 본인을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표 2-1. 참가자 구비 서류 ◆

- 자연인(개인)인 당사자가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 자연인(개인)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로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 자연인(개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부 문의 후 필요시 구비 요청)
- 법인의 대표이사, 지배인¹⁾, 1인법인의 사내이사가 당사자로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 법인의 소속직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부 문의 후 필요시 구비 요청)

1) 상법 제11조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당사자 자격으로 구술심리기일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지배인 또는 1인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만이 인정되며, 법인의 소속직원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인을 대표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고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양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에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진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일 제출할 경우 6부(심판부 3부, 상대방 당사자 1부, 심판사무관 2부)를 제출한다.

나. 심판부의 구술심리기일 준비

구술심리기일과 장소가 정해지고 당사자의 진술요지서가 제출되면, 주심심판관은 구술심리 개최 전에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시 심문·확인할 사항을 보고한다.

◆ 표 2-2. 주심심판관 보고사항 ◆

- ① 이 사건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의 내용
- ② 확인대상발명(디자인, 표장)의 내용
- ③ 증거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디자인, 상표)의 내용
- ④ 비교대상발명(디자인, 상표)과의 차이점
- ⑤ 사건의 주요쟁점
- ⑥ 구술심리시 확인할 사항 및 심문사항
- ⑦ 주심심판관이 직접 심문할 사항

한편, 심판장은 구술심리 개최 전에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구술심리 개최 전에 심문사항 및 주심심판관이 직접 심문할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6

기일의 변경

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심판장은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2-2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7 서식)로 통지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41③).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심판사무 취급규정§43①).

당사자가 지정된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신청서(심판사무 취급규정 별지 25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6 서식)에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기일변경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할 수 있다.

- ①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대리인 또는 증인이 해외 출장 또는 질병으로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
- ② 기일이 이보다 먼저 지정된 법원의 기일과 경합하는 경우
- ③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
- ④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이유로 제3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심판장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한 경우

나. 기일변경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일변경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당사자 1인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그 중 1인에게 기일변경신청의 이유가 생겼을 경우
- ② 지정기일 직전에 기일변경신청이 있어 증인 등 지정기일에 출석할 자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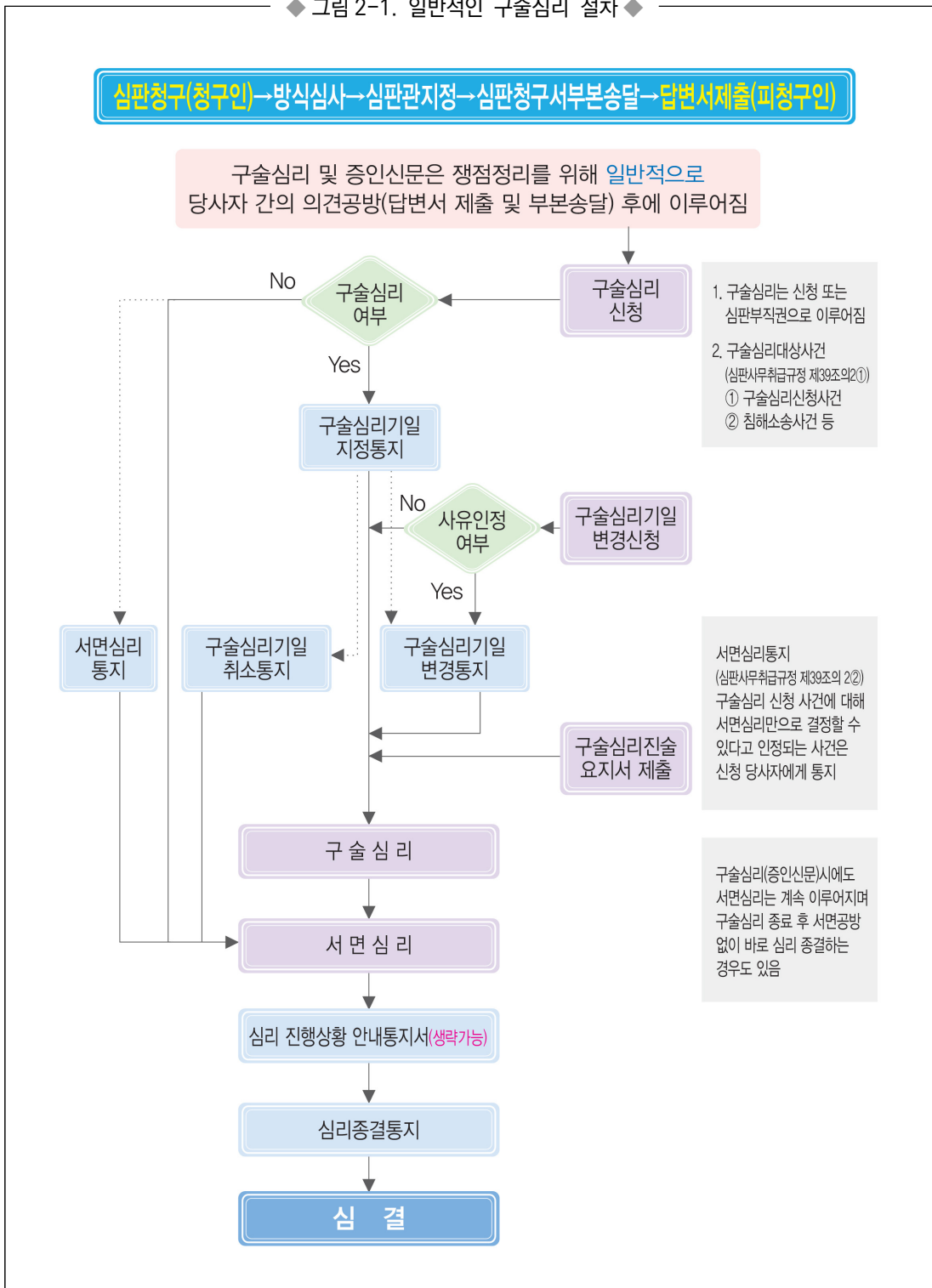
7

기일의 취소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2-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8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42의2②).

※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사건의 예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한 취하가 진행 중인 사건, 권리자의 권리 포기로 심결각하가 예상되는 사건 등

◆ 그림 2-1. 일반적인 구술심리 절차 ◆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www.kipo.go.kr/ipt



1 개정(開廷)

심판사무관은 구술심리 개정 전 참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심판부에 제출한다. 구술심리 개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 참석자 및 방청객에게 ‘구술심리 진행시 주의사항’을 구두로 알린다. 심판부가 심판정에 입장하면 심판사무관은 심판정 내 참석자 및 방청객을 모두 기립하게 하고, 심판부가 배석 후 참석자 및 방청객을 착석하도록 한다.

2 개시선언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개시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심판장은 당해사건의 구술심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밝히고, 생략해도 좋은 사항, 중점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심판장) 지금부터 (연도) 당0000, 특히 제000000호 무효심판 사건의 구술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봉 3타 : *생략가능*)

3 참석자 확인

심판장은 참석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구술심리를 통해 청산절차 진행 여부,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신청 여부 등을 질의함으로써 당사자적격여부를 확인한다.

- ① 당사자가 아닌 발명자 또는 고안자

②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 내지 직원

◆ 표 2-3. 구술심리 참석자의 적격여부 점검 ◆

구술심리에는 당사자(법인이면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지배인)이 출석해야 한다. 법인인 당사자의 소속직원 또는 개인인 당사자의 친·인척 등은 특허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법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 참여를 배제한다. 다만 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진술할 수는 있다.

- ☞ (심판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 ☞ (청구대리인) 예, 이쪽은 청구인 000입니다.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 ☞ (심판장)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 ☞ (피청구인) 예, 피청구인 000입니다.

4

주의사항 안내

- ☞ (심판장) 구술심리 진행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양 당사자와 대리인께서는 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에 따라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둘째, 양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 및 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추가 발언 기회 및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양 당사자 간 질의·답변을 삼가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하고, 진술내용은 녹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2-4. 구술심리 진행시 주의사항 ◆

1. 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에 따라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술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 및 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판장은 타측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고 추가 발언 기회 및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양 당사자간 질의·답변은 삼가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일 구술심리는 공개로 이루어지고 발언내용은 녹취 및 속기합니다. 발언 시에는 마이크에 대고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 심판정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자, 방청객 모두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심판부에 전달한 증거와 서류는 심판사무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필요한 경우 증거성립의 인부(認否)를 하도록 한다.

- ☞ (심판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부하십니까.
- ☞ (피청구인) 갑 제0호증 내지 갑 제0호증까지 성립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 ☞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0호증부터 을 제0호증까지 인부하십니까.
- ☞ (청구인) 을 제0호증부터 을 제0호증까지 모두 부지입니다.

◆ 표 2-5. 증거성립 인부 방법 및 사례 ◆

※ 증거성립 인부에 따른 상대방 태도(답변)

인부란 서류가 작성 명의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

- ☞ **성립인정** : 문서의 내용을 입증자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서가 입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진실로 작성된 것이고, 타인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내용의 이력서라도 진정성립이 될 수 있음
 - 공문서(특허공보, 사업자 등록증 등)는 으레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이 부지라 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진정한 것으로 간주함
- ☞ **부인** : 이와 반대로 그와 같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즉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것, 즉 작성명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
 - 증거서류를 부인할 경우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²⁾, 상대방은 필적 및 인

- 영감정 또는 증인에 의해 서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함
- 입증취지의 부인: 그 증거가 위조 등으로 조작된 것은 아니라서 성립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 ☞ **부지** : 작성명의자가 작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모르는 문서, 즉 본인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성립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인을 해야 함
 - 제출된 서증에 대해 부지할 경우 상대방은 증인 등을 내세워 서증의 성립을 입증해야 함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판례는 증거로 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규정, 통첩, 예규, 조례와 같은 것은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판결문 등의 단일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분만을 제출해서는 안 되고 그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 증거종류에 따른 인부의 예

- ☞ 확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
 - **(심판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문서에 불과하여 그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 ☞ 사진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
 - **(심판장)**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찍힌 우측하단의 날짜에 대해 피청구인은 사진의 날짜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주장할 사항이 있습니까?
- ☞ 제작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
 - **(심판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제작용 도면을 반포된 간행물로 인정합니까?

2)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서증의 예

서증의 경우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에 따라 서증 사본 모든 쪽의 하단에 다음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갑”,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을”, 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으로 분류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증은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하며, 번역문의 증거번호는 가지번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증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의 경우, 강제1호증(등록원부), 강제2호증(등록특허공보), 강제3호증(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경고장 등), 강제4호증(비교대상발명의 일본 공개특허공보), 강제4호증의1(비교대상발명의 번역문).

☞ 증거자료 : 등록원부, 비교대상발명(디자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실시(사용) 입증서류, 카탈로그, 증거물 사진, 도면, 고소장, 경고장, 소장 등

☞ 참고 자료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결문, 심결문, 심사기준 등

6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이 청구의 이유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정리해서 진술하고 싶은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건 발명기술, 배경기술, 상품거래 실태 등의 설명을 할 수 있다. 청구서, 심판사건 의견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않아도 심결의 기초가 된다.

☞ (심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제0항이 적절한 분할출원인지 여부와 제0항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지 여부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 (청구인) 이 사건 제0항은 ... (생략)입니다. 나머지는 구술심리 진술요지서의 기재대로입니다.

7

피청구인의 진술

심판장은 피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답변의 취지 및 이유의 요지를 진술하게 한다. 답변이유가 답변서 및 구술심리 진술요지서에 기재된 것과 같으면 그 취지를 진술하면 된다. 나머지 사항은 위 청구인의 진술과 같다.

- ☞ (심판장) 피청구인은 답변의 이유 중에서 쟁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 ☞ (피청구인) 이 사건 제0항의 원출원은 … (생략)입니다. 나머지는 구술심리 진술요지서의 기재대로입니다.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피청구인측이 진술한 답변에 대해 청구인측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피청구인측이 그것을 진술하게 한다.

- ☞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 ☞ (심판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9 심판장의 심문

심판장은 직권으로 당사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다. 심판관도 심판장에게 알리고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소§136②).

심판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새로운 진술내용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등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심판사무관에게 지시한다.

◆ 표 2-6. 심판장 심문 사례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증거 중에 있습니까?
 - ☞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주장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 ☞ 심판사무관은 조서에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한 경우
 - ☞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제0항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는 것입니까?
 - ☞ 심판사무관은 조서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0항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철회한다’라고 기재하십시오. 청구인 맞습니까?

10 상대방의 진술

석명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진술을 요구한다.

☞ (심판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11 추가 질문

☞ (심판장) 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 (청구인) 없습니다.

☞ (심판장) 피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 (피청구인) 없습니다.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서류제출기일과 심리종결시기를 예고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인정되었거나 주장된 사실들을 정리하여 양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져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보충 서류의 제출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심판장) 이후의 심리는 서면심리로 진행하겠습니다.

☞ (심판장) 이견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0월 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달 말경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00월 00일 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마치겠습니다.

13 폐 정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종료함을 알리고 폐정한다. 심판사무관은 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참석자 및 방청객을 기립하도록 한다.

☞ (심판장) 오늘의 구술심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의사봉 3타 : 생략가능)

14

구술심리 시나리오(특허)

[개정 전]

[심판사무관은 참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을 심판부에 제출한다. 참석자 및 방청객에게 구술심리 진행절차의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심판사무관) 구술심리 진행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간의 질의·답변은 삼가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 사항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판부에 전달할 증거와 서류들은 심판사무관을 통해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에는 마이크에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 구술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와 방청객 모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고, 심판정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開廷)

[심판부 입장]

(심판사무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참석자와 방청객 : 기립]

[심판장 : 배석 심판관이 각자의 자리 앞에 모인 것을 확인한 후 가볍게 인사하고 착석한다. 배석 심판관도 이것에 따른다]

[참석자와 방청객 : 인사]

(심판사무관)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참석자와 방청객 : 착석]

2. 개시선언

(심판장) 지금부터 (연도) 당0000, 특허 제000000호 무효심판 사건의 구술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3. 참석자 확인

(심판장) [정내(廷內)가 정리된 것을 보아가며]

(심판장)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청구대리인) 이쪽은 청구인 본인 000입니다.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피청구대리인)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4. 주의사항 안내

(심판장) 구술심리 진행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당사자와 대리인께서는 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에 따라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 당사자에게 발언기회 및 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추가 발언기회 및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 간 질의·답변을 삼가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하고, 진술내용은 녹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증거의 인부, 내용의 확정

(심판장) 먼저 증거 성립의 인부를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갑 제0호증부터 갑 제0호증까지 제출하셨죠?

(청구인) 네.

(심판장) 갑 제0호증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 원본을 자신의 자리 앞에 놓는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을 향해서] 원본을 이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심판사무관: 원본을 심판장 자리로 옮긴다]

[심판장: 원본과 갑 제0호증을 조사하고 배석심판관에게도 보인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을 향해] 갑 제0호증의 원본을 피청구인에게 보여 주세요.

[심판사무관 : 원본을 피청구인 자리로 옮기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온다]

[피청구대리인 : 원본을 자세히 조사하고 갑 제0호증과 대조하여 메모를 한다.

끝나고 심판장에게 인사한다]

(심판장)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무관 : 원본을 심판장 책상으로 가져간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제출되어 있는 증거의 성립을 인부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대리인) 갑 제0호증 내지 갑 제0호증까지 성립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을 제0호증부터 을 제0호증까지 제출하셨죠?

(피청구대리인) 네.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성립을 인부하십니까.

(청구대리인) 을 제0호증은 성립 인정하고, 을 제0호증 내지 을 제0호증은 부지입니다.

(심판장) 청구인(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특허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해서 절차중단이나 수계신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피)청구대리인) 해당 없습니다.

6. 청구인의 진술

(심판장) 다음으로 청구인부터 이 건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이 사건 특허는 0000년 0월 0일에 출원된 것으로 그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구조의...

(심판장) [발언을 막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청구인은 우선 청구취지를 진술하고 뒤이어 청구이유는 구술심리 진술요지서 기재대로라면 그 취지만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알겠습니다. 「특허 제000000호를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심판장) 심판청구서의 기재대로 입니까?

(청구대리인) 네

(심판장) 다음으로 청구이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0000년 0월 00일 제출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에 기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생략) 이상입니다.

7. 피청구인의 진술

(심판장) 다음에 피청구인, 답변 취지와 답변 이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대리인) 답변서와 0000년 0월 00일 제출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의 기재대로입니다.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추가할 진술이 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중 기재불비에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피청구인의 의견은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청구인과 피청구인 추가 의견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피청구대리인) 없습니다.

9. 심판장의 심문

(심판장) 그럼 심판부에서 심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묻겠습니다. 본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갑 제0호증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점은 갑 제0호증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의 차이점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심판장님. 설명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이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심판장) 예, 좋습니다.

(청구대리인)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1을 보이면서]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생략)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0 내지 0호증으로부터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이에 대하여 반론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예. 이미 답변서에서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만,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라고 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 적용과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의 적용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피청구인 어떻습니까?

(피청구대리인) [피청구인측 : 협의] 예. 그러면, ----에 관하여 갑 제0호증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에게 조서 기재 지시) 심판사무관은 ‘피청구인은 ----에 관하여 갑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심판장) 다음은 주심심판관께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심판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제0항 발명이 ---이므로 기재불비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는 것입니까?

(청구대리인) 예.

(심판장) 조서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항 발명이 ---이므로 기재불비라고 주장한 것을 철회한다'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청구인 맞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맞습니다.

(주심심판관) 피청구인이 0000년 0월 0일 제출한 의견서에 ---는 ---라고 기재하였는데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청구대리인) 예. 그렇습니다.

10. 상대방의 진술

(심판장) 청구인은 이에 대해 반론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11. 추가 질문

(심판장) 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없습니다.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심판장) 이건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0월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달 말(또는 다음달 중순)경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도) 당0000호 무효심판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심판사무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참석자와 방청객 기립]

13. 폐정

15 구술심리 시나리오(상표)

[개정 전]

[심판사무관은 참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을 심판부에 제출한다. 참석자 및 방청객에게 구술심리 진행절차의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심판사무관) 구술심리 진행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간의 질의·답변은 삼가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 사항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판부에 전달할 증거와 서류들은 심판사무관을 통해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에는 마이크에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 구술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와 방청객 모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고, 심판정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開廷)

[심판부 입장]

(심판사무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참석자와 방청객 : 기립]

[심판장 : 배석 심판관이 각자의 자리 앞에 모인 것을 확인한 후 가볍게 인사하고 착석한다. 배석 심판관도 이것에 따른다]

[참석자와 방청객 : 인사]

(심판사무관)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참석자와 방청객 : 착석]

2. 개시선언

(심판장) 지금부터 (연도) 당0000, 상표등록 제000000호 무효심판 사건의 구술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3. 참석자 확인

(심판장) [정내(庭內)가 정리된 것을 보아가며]

(심판장)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청구대리인) 이쪽은 청구인 본인 000입니다.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피청구대리인)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4. 주의사항 안내

(심판장) 구술심리 진행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당사자와 대리인께서는 심판장의 구술심리 지휘에 따라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 당사자에게 발언기회 및 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추가 발언기회 및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 간 질의·답변을 삼가시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하고, 진술내용은 녹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증거의 인부, 내용의 확정

(심판장) 먼저 증거 성립의 인부를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갑 제0호증부터 갑 제0호증까지 제출하셨죠?

(청구인) 네.

(심판장) 갑 제0호증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 원본을 자신의 자리 앞에 놓는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을 향해서] 원본을 이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심판사무관: 원본을 심판장 자리로 옮긴다]

[심판장: 원본과 갑 제0호증을 조사하고 배석심판관에게도 보인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을 향해] 갑 제0호증의 원본을 피청구인에게 보여 주세요.

[심판사무관 : 원본을 피청구인 자리로 옮기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온다]

[피청구대리인 : 원본을 자세히 조사하고 갑 제0호증과 대조하여 메모를 한다.

끝나고 심판장에게 인사한다]

(심판장)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무관 : 원본을 심판장 책상으로 가져간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제출되어 있는 증거의 성립을 인부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대리인) 갑 제0호증 내지 갑 제0호증까지 성립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을 제0호증부터 을 제0호증까지 제출하셨죠?

(피청구대리인) 네.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성립을 인부하십시오.

(청구대리인) 을 제0호증은 성립 인정하고, 을 제0호증 내지 을 제0호증은 부지입니다.

(심판장) 청구인(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상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해서 절차중단이나 수계신청 대상에 해당 되나요?

((피)청구대리인) 해당 없습니다.

6. 청구인의 진술

(심판장) 다음으로 청구인부터 이 건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 0000년 0월 0일에 출원되어 등록되었으며, 지정상품은 ○○, ◎◎, □□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청구인의 선사용상표 ◇◇◇와 동일유사하고...

(심판장) [발언을 막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청구인은 우선 청구취지를 진술하고 뒤이어 청구이유는 구술심리 진술요지서 기재대로라면 그 취지만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알겠습니다. 「상표등록 제000000호의 지정상품 ○○, ◎◎, □□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심판장) 심판청구서의 기재대로 입니까?

(청구대리인) 네

(심판장) 다음으로 청구이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0000년 0월 00일 제출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에 기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생략) 이상입니다.

7. 피청구인의 진술

(심판장) 다음에 피청구인, 답변 취지와 답변 이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대리인) 답변서와 0000년 0월 00일 제출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의 기재대로입니다.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심판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추가할 진술이 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중 매출액에 대한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피청구인의 의견은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청구인과 피청구인 추가 의견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피청구대리인) 없습니다.

9. 심판장의 심문

(심판장) 그럼 심판부에서 심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요부가 △△라고 주장하셨는데, 동일 지정상품에서 ‘○○△△’, ‘◇◇△△’ 등 △△를 실제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많은데, 해당 상표에 대해서도 △△를 요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대리인) 예, 심판장님. 설명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이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심판장) 예, 좋습니다.

(청구대리인)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 동종업계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지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를 보이면서] 색채, 도형이 등이 결합되어.(중략) ...하므로, 식별력을 지닌 요부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이에 대하여 반론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예. 이미 답변서에서 △△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만, ... (생략) 이상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하는 것이 동종업계에서 널리 퍼져있는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의 형상과 칭호가 선사용상표의 ----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피청구인 어떻습니까?

(피청구대리인) [피청구인측 : 협의] 예. 그러면, ----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자 답변서에서 제출한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심판장) (심판사무관에게 조서 기재 지시) 심판사무관은 ‘피청구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답변서에서 제출한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심판장) 다음은 주심심판관께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심판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생략)...하여 수요자들 사이에서 청구인의 출처표지로 알려진 상표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제출된 매출액 증빙이 블로그 게시물 밖에 없어요.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최근 5년간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심판장) 알겠습니다. 그럼 갑0호증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온라인쇼핑몰 www.0000.com에서 사용된 상표가 청구인의 선사용상표와 다르게 보이는데, (생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예, 오늘 해당 상품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실물 제출)

(심판장) 심판사무관은 해당 상품 실물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해당 상품을 보면 (생략)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 이에 대한 피청구인 의견 있으신가요?

(피청구대리인) 해당 실물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장) 청구인은 해당 실물을 부분송달 개수만큼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는 부분 송달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추가 질문

(심판장) 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없습니다.

11.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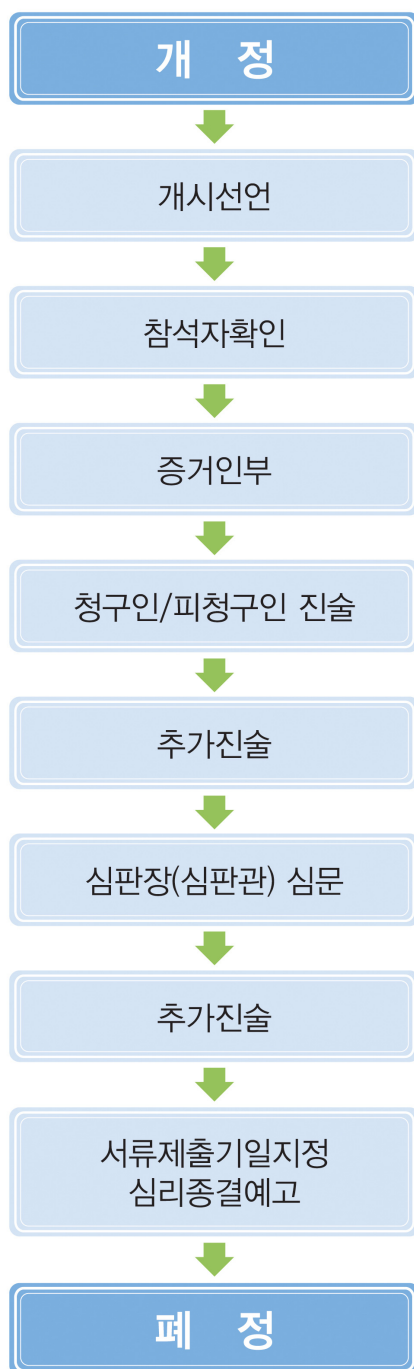
(심판장) 이 사건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0월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달 말(또는 다음달 중순)경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도) 당0000호 무효심판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심판사무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참석자와 방청객 기립]

12. 폐정

◆ 그림 2-2. 일반적인 구술심리의 진행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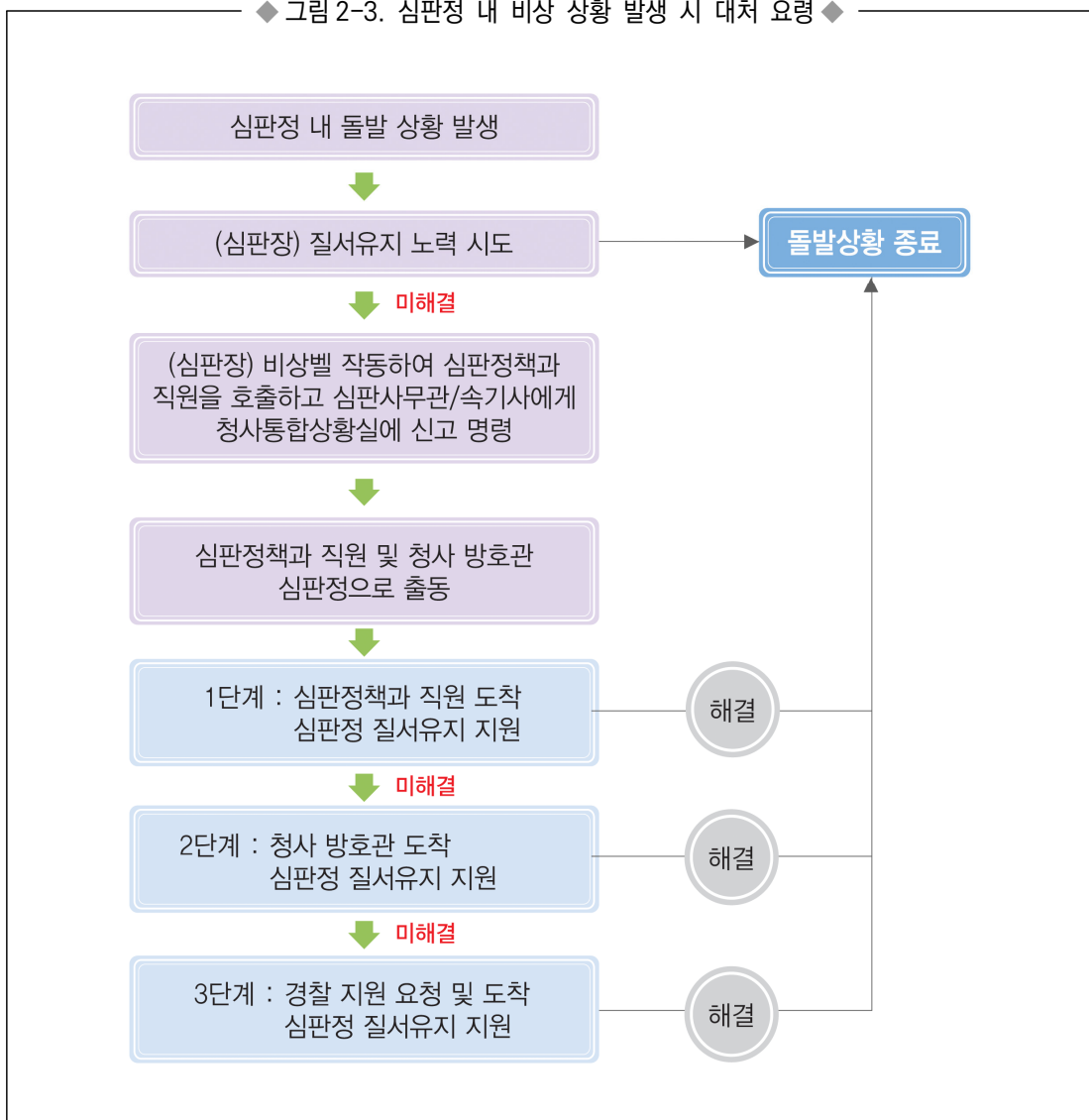


16

심판정 내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행하며,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질서 유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심판장 자리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서 심판정책과 직원을 호출하고, 청사관리소 통합상황실에 신고하여 방호관을 호출하거나 경찰에 질서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림 2-3. 심판정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



제3장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증인신문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www.kipo.go.kr/ipt



1

의 의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증인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심판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한다. 증인은 경험사실을 보고하는 자이지 결코 자기의견이나 상상의 바를 진술하는 자일 수 없다.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감정증인도 증인일 뿐 감정인은 아니므로 그 조사절차는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다.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증인신문은 가능한 구술심리에서 당사자신문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심판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구술심리를 병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은 심리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절차, 비용, 기일 등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특허심판에서는 사건의 쟁점에 관한 입증은 대부분 서증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지공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증인능력

당사자(자연인),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외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가진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는 증인신문이 아닌 당사자신문을 하게 된다.

3 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로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가 있다.

가. 출석의무

기일통지를 받은 증인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심판장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는 없으므로(특§157②), 심판장은 특허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한다.

한편, 증인과 증명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310).

나. 진술의무

신문에 대해 증언할 의무를 진술의무라 한다. 증인은 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민소§331),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소§330).

증인은 ① 증인자신 또는 증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근친자가 증언의 결과로 처벌 또는 치욕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민소§314) ②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갖는다(민소§315).

다. 선서의무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선서하는 의무이다. 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 위증의 벌에 대해 경고하여야 하며(민소§320), 증인은 일어나서 엄숙하게 선서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11 서식)를 소리내어 읽은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민소§321)으로 한다.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www.kipo.go.kr/ipt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사건 신청서(특시칙 별지 3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1 서식)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증인의 인적사항 포함)를 기재하고, 증인신문사항을 첨부한다(특시칙§65의2①, 디시칙§79①, 상시칙§67①).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심판사건 신청서에 증인신문사항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보정(보충) 지시를 한다. 또한 제출이 되었어도 신문사항의 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보정(보충) 것을 제출하도록 보정(보충) 지시를 한다.

위의 보정(보충)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심판부 판단으로서 증거조사신청의 채택을 유보하거나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또다시 적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3-1. 증인신문사항 예시 ◆

1. 증인의 직업은 건축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2. 증인은 이 사건의 청구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3. 증인은 이 사건의 피청구인도 알고 있습니까?
4. (갑 제3호증의 물품을 제시하면서) 증인은 이 물건을 20 . . . 00회사에 납품한 적이 있습니까?
5. 증인은 00회사에서 이 물건을 인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6. 증인 이외에 이 물건의 납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 증인은 청구인이 납품의뢰한 제품의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8. 증인은 청구인이 갑 제3호증의 물품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까?
9. 증인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갑 제3호증의 물품을 여러 명과 함께 건축물에 부착하시나요?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증인신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신청을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증인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증인신문은 통상 구술심리와 함께 진행되므로 심판정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시작 직전에 변경된 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 사항을 제출할 경우에는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면 신문을 허용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심판장은 필요할 경우 직권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특§157⑤). 절차나 주의 사항은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에 준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만 다르다.

- ① 증인은 심판부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고 지정한다.
- ② 증인신문사항은 심판장이 작성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 심판장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증인에게 미리 보낸다.
- ③ 당사자는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증인에게 신문을 할 수도 있다.
- ④ 증인에 대한 여비 등의 비용은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민소규§19).
- ⑤ 심판장은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증인신문 결과(증인신문조서)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특§157⑤).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서 통지

증인신문을 개최하기로 결정하면, 심판장은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출석요구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3 서식)를 작성하여 증인에게 발송한다.

증인신문은 구술심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인신문기일은 구술심리기일과 같다. 기일이 정해지면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구술심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조사기일통지)에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증인출석요구서에 기재할 내용은 일시, 장소, 신문사항요지이다.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이 출석하는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판사무취급규정§52).

상기의 서류가 송달 불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또는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 불능할 때는 공시송달한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 불능한 경우는 그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상기의 서류가 송달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곧 심판장에게 회부한다.

5 증인신청서부분 송달

심판장은 증인신문사항이 첨부된 증인신청서의 부분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51②).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이 결정된 직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증인의 교통비 등을 증인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토록하기 위하여 증인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면 심판정책과 방식담당자는 증인신문 신청인에게 증인신문에 필요한 비용(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의 비용)을 계산(특§165⑥, 실§33, 디§153⑥, 상§152⑥)하여 심판비용예납요구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6

서식)를 발송한다. 다만, 심판사건 신청서(증인신청서)에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8 서식)를 첨부한 경우에는 예납통지 절차를 생략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17①). 증인신문기일 전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비용예납요구서를 발송 후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신문이 취소된 경우, 심판정책과 담당자는 심판비용예납환급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7 서식)를 발송하여 예납금을 반환한다. 다만, 그 통지가 늦어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한 경우는 증인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7 반대신문사항 제출

증인신문사항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고 부분을 준비하여 반대신문 전, 심판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만 신문할 수 있다.

※ 반대신문사항은 작성이나 제출의무가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심판부에서 반대신문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판사무관이 증인신문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교부하도록 한다.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심판사무취급규정§50, 민소§79)

종래 당사자가 번갈아 행하는 증인 신문방식의 형식적·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2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심판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主)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항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주신문에 갈음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주신문 내용 뿐 아니라 증인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곧바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한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그 활용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하여 적대적이거나 글을 쓸 수 없는 증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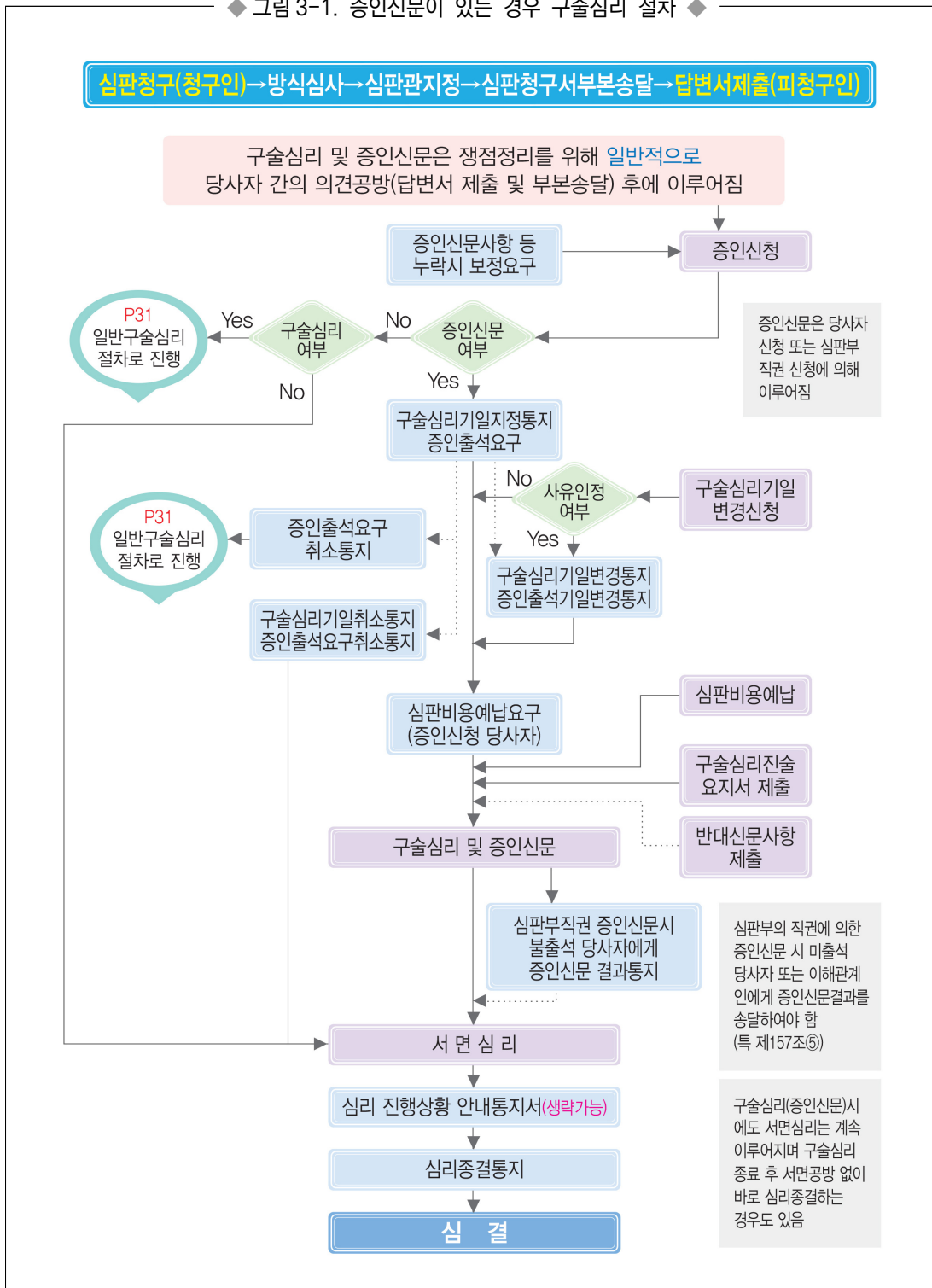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심판사무취급규정§43조)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후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3-2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4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13-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5 서식)를 통지한다.

◆ 그림 3-1.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 절차 ◆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www.kipo.go.kr/ipt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는,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 진행절차(제2장 Section 2의 1~10)에 증인신문절차 11~18이 추가된다.

증인신문은 경우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전에 할 수도 있다.

3 참석자 확인

추가로 증인의 참석도 확인한다.

- ☞ (심판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 ☞ (청구대리인) 예, 이쪽은 청구인 000입니다.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 ☞ (심판장)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 ☞ (피청구인) 예, 피청구인 000입니다.
- ☞ (심판장) 증인 000씨 [참석을 확인한다]
증인 000씨 [참석을 확인한다]

11 증인신문 개시

구술심리기일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병행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진술 전에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 ☞ (심판장)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의 구술심리를 중단하고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 (심판장) 증인출석요구서와 증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세요.(심판사무관이 증인에게 받아 심판장에 전달한다. 미리 받아두어도 된다.)

12 증인 확인

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 얼굴을 비교 확인한다. 증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을 확인한다. 위 사항 등이 증인신문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증인 혹은 당사자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다. 특히 주소의 경우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그 결과, 신문할 증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증인신문 신청서의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사무관에게 석명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 후 심리를 진행한다.

증인과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질의하여 친족 또는 후견인 관계일 경우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일 시작 전에 심판사무관은 미리 증인 신분을 확인해둔다.

☞ (심판장) (신분증과 증인의 얼굴을 비교 확인한다) 증인은 성명, 나이, 주소를 말 씀해 주십시오.

☞ (심판장) 증인, 증인신청인과 증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증언거부권(민소§314, §315)과 선서거부 권이 있음을 설명하며, 위증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특§227①, 실§47, 디 §221①, 상§232①)한 후 선서하게 한다. 증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심판장은 전원을 심판 대 앞에 나란히 서게 하고, 증인 중 1명을 지정하여 선서서를 대표로 낭독시킨다. 낭독 후에는 선서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3-2 서식)에 증인이 서명 하도록 한다(민소§321).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격리신문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증인을 심판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민소§328).

☞ (심판장)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맹세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특 허법의 규정(특§227)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만 약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는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증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소§321).』
- ☞ (심판장)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무관은 증인의 서명날인을 도와주고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심판장에게 전달한다)
- ☞ (심판장) 증인 2명을 격리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사무관은 증인 000씨를 심판정 밖으로 안내해주십시오.(심판사무관이 증인을 심판정 밖으로 안내한다)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심판장은 증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 ☞ (심판장) 지금부터 증인이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심판부를 향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천천히 증언을 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증언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증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등은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신청해 주십시오.

15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심판장은 증인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신문을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도록 한다. 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민소§327).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삼가고,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준다. 주신문을 할 당사자(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도 있다.

- ☞ (심판장) 증인신청인은 유도신문을 삼가고, 증언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인이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리인) 이것으로 신문을 마칩니다.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대신문 하도록 한다.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한다.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의 새로운 사항에 대한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반대신문 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대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심판부에 제출한다.

- ☞ (심판장) 반대신문사항을 심판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주십시오. (심판사무관은 반대신문사항을 심판부와 증인신청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 ☞ (심판장) 심판장의 허가없이 주신문에 없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신문을 제한하겠습니다. 반대신문을 시작하십시오.
- ☞ (청구대리인) 이것으로 반대신문을 마칩니다.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심판장은 증인신청인이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한다.

- ☞ (심판장) (피)청구인 증인에게 다른 질문 있습니까?
- ☞ (심판장) 그러면 심판부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연구소에 근무한 것은 언제입니까?

18 증인신문 종료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배석 심판관의 의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종료한다.

- ☞ (심판장) 그러면 000 증인의 신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19 구술심리 재개

증인신문이 끝나면 구술심리를 재개한다.

- ☞ (심판장) 그러면 구술심리를 재개합니다.
청구인, 보충할 의견이 있습니까?
- ☞ (청구인) 없습니다.
- ☞ (심판장) 피청구인, 보충할 의견이 있습니까?
- ☞ (피청구인) 없습니다. 예. 갑 제0호증은 ... (생략) 입니다.

20 기일지정 또는 심리종결의 예고

추가로 보충할 서류제출 기일과 심리종결 기일을 예고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인정되었거나 주장된 사실들을 정리하여 양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져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보충 서류의 제출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 (심판장) 이후의 심리는 서면심리로 진행하겠습니다.
- ☞ (심판장) 이 사건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0월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달 말경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폐 정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종료함을 알리고 폐정한다. 심판사무관은 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출석자 및 방청인을 기립하도록 한다.

- ☞ (심판장) 그럼 이상으로 2020당0000 무효심판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와 동일한 시나리오 생략)

3. 참석자 확인

(심판장)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청구대리인) 이쪽은 청구인 본인 000입니다.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피청구대리인)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심판장) [증인의 참석을 확인한다]

증인 김00씨

증인 최00씨

11. 증인신문 개시

(심판장)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의 구술심리를 중단하고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심판사무관을 향해] 증인을 안내해주세요.

[두명의 증인 : 입정]

[두명의 증인 : 증인석 뒤쪽에 나란히 선다]

(심판장) 증인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주십시오.

[각 증인 : 증인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심판사무관에게 건넨다. 심판사무관이 미리 걸어두어도 된다]

[심판사무관 : 증인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심판장에게 전달한다]

12. 증인 확인

(심판장) [증인1을 향해] 김00씨?

(증인1) 네

(심판장) [신분증과 증인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1) 김00 39세입니다.

(심판장) 주소는 어디입니까?

(증인1) 서울시 종로구 00동 33번지입니다.

(심판장) 증인출석요구서의 주소는 2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하신 겁니까?

(증인1) 이사한 것은 아니고 전에는 200번지였습니다만 얼마 전 지번의 변경이 있어 33번지로 되었습니다.

(청구대리인) 심판장님, 이 점은 증인신문 신청서를 보정하겠습니다.

(심판장) 그러면 증인신문조서에는 33번지로 기재해주세요. 청구인은 증인신문 신청서를 나중에 보정해 주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증인1) 출판회사의 편집장입니다.

(심판장) 어떤 출판사 입니까?

(증인1) 00출판사입니다.

(심판장) 증인, 증인은 청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1) 회사 동료입니다.

(심판장) [증인2를 향해] 그럼, 다음으로 박00씨

(증인2) 네. ...(이하 증인 1과 동일)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심판장)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맹세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만약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 때에는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증인들) [고개를 끄덕인다] 예

(심판장) 그럼, 증인들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무관 : 각 증인에게 선서서를 건넨다]

(증인1이 대표로 선서) [일어서서] 『선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여러명 일 때에는 심판장은 그 전원을 심판대 앞에 나란히 서게하고 증인 중 1명을 지정하여 선서서를 대표로 낭독시킨다]

(심판장) 그러면 증인들은 선서서에 서명하십시오.

[심판사무관 : 서명날인을 도와주고 서명날인이 된 선서서를 심판장에게로 제출하고 좌석에 돌아와 착석한다]

(심판장) 증인 2명을 격리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김00씨, 박00씨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피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그러면 최초로 김00씨의 신문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사무관은 증인 박00씨를 심판정 밖으로 안내해주십시오.

[심판사무관이 증인을 심판정 밖으로 안내하고 자리에 돌아온다]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심판장) [증인1에 대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증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심판부를 향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천천히 증언을 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증언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증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등은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신청해 주십시오.

15. 증인신청인의 주신문

(심판장) [증인신청인에게] 청구인은 유도신문을 삼가고, 증언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인이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구인, 주신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대리인) 증인이 주전자에 대해 발명을 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1) 거의 작년말 정도에 조모를 위해 애용하던 탕제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탕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심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증언은 조서에 적어야 하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대리인은 증인이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십시오.

(청구대리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주전자 바닥을 개량했다는 말입니까?

(증인1) 그렇습니다.

(청구대리인) 그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자 바닥을 a와 같이 했다는 것.....

(피청구대리인) [질문을 가로막고] 심판장님, 지금의 질문은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주의
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장) 질문자가 증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은 유도신문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의해서
질문해주시십시오.

(청구대리인) 증인이 a로부터 힌트를 얻어 생각해 낸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증인1) 처음에는 주전자 바닥을 동심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생략)

(청구대리인) 심판장님, 갑 제0호증의 원본을 증인에게 보여주어도 되겠습니까?

(심판장) 예. 증인에게 보여주십시오.

[심판사무관 : 원본을 증인에게 보인다]

(청구대리인) 증인은 그 도면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1)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주전자의 도면으로 제가 제작했습니다.

(청구대리인) 그 시작품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1) 거래처의 평판을 듣기 위해서 000씨에게 추석 선물로 배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피청구대리인) 심판장님, 지금 것은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전문증언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장) 지금의 증언은 전문증언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서에서 생략합니다.

...(중략)

(청구대리인) 이것으로 주신문을 마칩니다.

16. 반대신문

(심판장) 피청구인 쪽에서 반대신문을 하겠습니다. 반대신문사항을 심판부와 청구인에게 주십시오.

[심판사무관은 반대신문사항을 심판부와 증인신청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심판장의 허가없이 주신문에 없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할 때에는 신문을 제한하겠습니다. 반대신문을 시작하십시오.

(피청구대리인) 증인이 동경금속가공에 갔을 때 최00씨의 지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1) 박00씨로부터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피청구대리인) 회사에서는 어디서 최00씨를 만났습니까?

(증인1) 연구소의 소장 방에 안내되어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피청구대리인) 그러면 최00씨를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증인1) 1991년 4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대리인) 1991년이었다는 것은 틀린 기억이 아닌지요?

(증인1) 기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청구대리인)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91년에 최00씨는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최00씨가 연구소장에 취임한 것은 1992년 4월입니다.

(청구대리인) 심판장님, 지금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증인에게 들려줘서 증인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피청구대리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인 최00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최00씨도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기 때문에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 계속하십시오.

(피청구대리인) 그렇다면 증인이 최00씨를 만나서 주전자의 시작을 의뢰한 것은 1992년 4월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증인1) [자신 없는 듯이] 그렇습니까.. 하지만.....

(피청구대리인) [심판장에게] 이상으로 마칩니다.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심판장) [청구인측에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청구인측 : 의논]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배석 심판관의 의향을 확인하고] 그러면 김00 증인의 신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000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00씨를 불러 주십시오.

...(이하생략)

(심판장) 청구인은 다른 질문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심판장 : 좌우의 배석 심판관 쪽을 둘러보고 간단한 합의]

(심판장) 그러면 제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소장대리로서 연구소에 근무한 것은 언제입니까?

(증인2) 0000년 0월 00일에 소장대리를 임명받았습니다.

(심판장) 그 때 연구소에는 어느 방을 사용했습니까?

(증인2) 소장 방을 사용했습니다.

(심판장) 연구소의 사람들은 증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습니까?

(증인2) ‘소장’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18. 증인신문 종료

(심판장) 그러면 이것으로 증인신문을 마칩니다. 최00씨 수고하셨습니다.

[심판사무관 : 최00씨를 방청석으로 안내한다]

19. 구술심리 재개

(심판장) 그러면 구술심리를 재개합니다. 청구인 보충할 의견이 있습니까?

(청구대리인) 없습니다. 나중에 조서를 열람한 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은 어떻습니까?

(피청구대리인) 최00 증인의 증언 중에 주전자 시제품의 배포지에 관한 내용을 조서에서 확인한 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20. 기일지정 또는 심리종결의 예고

(심판장) 이 사건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0월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달 말경에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당0000 무효심판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심판봉 3타 :생략가능)

(심판사무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참석자와 방청객 기립]

21. 폐정

◆ 그림 3-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의 진행순서 ◆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www.kipo.go.kr/ipt



1

심판장의 지휘

심판장은 증인신문을 원활히 행하기 위하여 직권(보충)신문을 포함하여 심판정내에서의 지휘를 적절히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판정내에서 사진촬영, 속기, 녹음, 녹화 또는 방송을 하려면 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심판장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질문을 한 때에는 심판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이 아닌 질문

일문일답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포괄적 또는 추상적인 질문은 하여하지 않는다.

나. 유도질문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장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민소칙§91).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나, 심판장이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이 제한될 수 있다(민소칙§92).

다.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질문

라. 이미 한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증인의 증언이 오해 또는 망각에 의한 것일 때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용된다.

마.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질문

다만, 감정증인에 대하여는 허용된다.

바. 전문증언(傳聞證言)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구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로 전문한 제3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경험한 자료부터 증언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허용된다.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증인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장이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331). 증인이 메모 등에 의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인의 기억에 의하여 하여야 되지만, 기술적인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적당한 서류를 참조하면서 진술하는 편이 정확한 증언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장은 증인이 진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증거의 문서 등을 증인에게 보여준 후 진술을 하게 하여도 좋다.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입증사항에 대하여 일정의 심증이 얻어져, 그 결과 예정하고 있던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 시점에서 증인신문을 종료한다.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증인신문 종료 후, 심판장(심판부)과 심판사무관은 조서에 기록할 증인의 진술의 요지에 대하여 상의하고, 심판장(심판부)은 심증형성상의 근거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6 당사자의 증인신문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얻어 문서,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7 재정증인

재정(在廷)증인이란 심판원의 증인신문결정 및 출석요구가 없었는데도 심판정에 임의 출석하여 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채택된 증인을 말한다. 신문사항이 간략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아직 불명료한 점에 대하여 재정증인에게 신문할 것을 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도 동의하고 그 증인신문이 이미 행하여진 증인신문의 보충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다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보충적인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민소§310)

증거조사에 대하여 민소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특§157②, 실§33, 디§145②, 상§144②)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①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②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설명 또는 정리하는 경우(회계·경리관계, 의사의 진료관계 감정인 등), ③형식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계산관계, 장부·통장 등의 관련성 등), ④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부부·친족간의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등에 활용한다.

서면에 의한 증언(민소칙§84)의 경우 선서 없이 반대신문도 받지 않으므로 신빙성 문제 등 실시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증인신문의 순서

신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①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②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③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에 의한 재신문(재주신문) 순서를 따른다. 다만, 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②,③의 순서에 다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①,②,③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민소칙§89).

심판장은 증언이나 진술이 상이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상호·당사자 상호·당사자와 증인과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대질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민소§3296, §367, §3687).

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심판관은 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민소§327).

10 증인신문의 요령

- ①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잘라서 한다.
- ② 용어는 일상적인 회화체를 사용한다.
- ③ 전문용어는 그 뜻을 이해시킨 뒤에 사용하고 특수한 용어는 한자도 겸용한다.
- ④ 질문태도는 진지하고 냉정하게 한다.
- ⑤ 증인의 성격, 교양의 정도, 표현능력, 성향 등을 잘 파악한 다음 질문한다.
- ⑥ 신문은 항상 신중하고 특히 표현방법에 유의한다.
- ⑦ 의견을 구하는 신문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⑧ 심판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 ⑨ 조서작성이 용이하도록 신문한다.
- ⑩ 신문 도중에 서면, 도면 등을 제시하거나 서증을 인용할 때에는 심판사무관에게도 이를 보여 확인시키면서 신문한다.

제4장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구술심리 기일의 종결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구술심리기일이 종결되면, 양 당사자는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이 석명을 구한 내용, 제출 요청한 자료, 보충할 의견 등을 정리하여 추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이 추가서면의 제출기일을 고지하므로 기일 안에 제출하도록 한다.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가. 조서의 작성 및 기한

구술심리기일이 종결되면, 구술심리에 참여한 심판사무관은 심리의 요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구술심리조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10 서식)를 작성한다(특§154⑤). 구술심리조서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 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특§154⑤,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3).

나. 목적 및 효력

구술심리조서는 구술심리기일에 있어서 심리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이것에 관하여 확실한 증명 문서를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다. 이에 의하여 심판절차의 진행을 밝혀 절차의 안정성·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상급심에서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구술심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고(민소 §158) 조서에 기재가 있으면 그 사실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서의 기재가 없으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조서는 관계인(대리인·참가인 등, 증인·감정인도 자기의 증언이나 감정의견에 관한 관계인이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원은 이를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민소 §157).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구술심리 진술의 내용, 증인의 선서나 진술내용

등은 법정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증거가 되는데 그친다. 다만 조서는 엄격한 형식 하에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다. 구술심리조서의 기재사항

(1)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의 기재사항은 형식적 기재사항과 실질적 기재사항으로 구별된다. 형식적 기재사항은 구술심리가 형식과 절차에 맞게 개최되었음을 증명하므로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특§154⑦, 민소§153). 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심판번호 및 사건의 표시
- 심판장, 심판관 및 심판사무관 등의 성명
- 출석한 당사자·대리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 구술심리의 날짜와 장소
- 구술심리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 기재(심판사무취급규정§39의4⑤)

조서에는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심판사무관이 기명날인한다.³⁾ 다만, 심판장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판부의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하며, 심판부의 심판관 모두가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2)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은 구술심리의 내용을 이루는 당사자나 심판원의 행위 및 증거조사의 결과 등이다. 구술심리의 내용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그 요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소§154). 다만, 특허심판에는 민소§220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서의 실질

3) 특허법 제154조 ⑥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 검증의 결과
- 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심판

실질적 기재사항은 형식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그것이 없어도 조서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3)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당사자가 주장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이 쟁점이나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당사자가 이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심판부의 석명에 기하여 당사자가 답변한 내용이 주장서면에 기재된 것과 뉘앙스가 다르거나 주장서면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면적으로 주장 서면을 읽어서는 손쉽게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당초 서면공방에서는 다툼이 있었지만 쟁점정리과정에서 구술심리를 통하여 상호 양해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거나 한쪽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용하게 된 사실관계나 일부 주장
- 당사자가 구술심리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주기를 희망하는 경우

(4) 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소송기록(조서포함)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민소규 제4조①)
- 고안과 발명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허 : 이 사건 발명, 확인대상발명,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 실시주장발명
실용신안 : 이 사건 등록고안, 확인대상고안, 정정고안, 비교대상고안, 실시주장고안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상표와 서비스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표를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서에 증거정리 과정에서 용어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하여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에 증거의 진정성립 여부가 심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성립의 인부는 중요한 절차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증거 성립의 인부 진술을 미리 받아두면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술심리에서 증거 성립의 인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표 4-1. 구술심리조서 기재 예시 ◆

특허심판원			
제 ○ 부			
구 술 심 리 조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심 판 장	일 시 : 장 소 : 공 개 여 부 :		
심 판 사 무 관 청 구 인 성 명 대 리 인 명 칭 피 청 구 인 성 명 대 리 인 명 칭	(불)출석 (불)출석 (불)출석 (불)출석		

1. 당사자의 주장
 -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00. 0.00.자 의견서 설명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은 공지시점이 불명확하므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나. 증거인부
 - 갑 제0 및 0호증 부지하고 갑 제0호증 입증취지 부인하고 나머지는 성립을 인정함
 - 을 제0호증은 부지하고 갑 나머지는 성립인정함
3. 심판부 지시사항
 - 가. 조서 기재사항
 - 청구인이 '00. 0. 0.자 의견서에 제출한 갑 제0증은 철회함
 - 나. 심판부 고지사항
 - 양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으면 00. 0.까지 제출할 것
 - 제출된 서류와 구술심리에서 진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00.00.내에 심리 종결할 예정임

※ 기타 분야별 조서 작성 예제는 별첨3 참고

◆ 표 4-2. 조서에 서증 기재 시 유의사항 ◆

- ① 서증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에는 ‘갑’, 피청구인이 제출한 것에는 ‘을’,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한 것에는 ‘병’으로 기재함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 등
 -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부호를 그대로 따름을 유의할 것
- ② 복수의 서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에는 하나의 모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이를 나타냄
 -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 * 증거의 성립 인부를 조서에 기재할 때, 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까지 모두 기재해야 함
 - * 간혹 대리인이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할 것
- ③ 당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당사자가 다른 심판이 병합될 경우 심판장은 기본부호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 제출자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할 것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출자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청구인 참고자료 1, 피청구인 참고자료 1 등
 - * 간혹 대리인이 참고자료 1호증, 참고자료 2호증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할 것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증인신문의 종료 후 심판사무관은 증인신문조서(구술심리 매뉴얼 2-9 서식)를 작성하여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특§154⑤,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3).

※ 증인신문조서는 별첨3 참고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당사자신문의 종료 후 심판사무관은 당사자신문조서(구술심리 매뉴얼 2-10 서식)를 작성하여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특히 구술심리기일에 당사자신문이 진행된 경우, 구술심리조서만 작성하고 당사자조서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한다. 구술심리조서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특§154⑤,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3).

※ 당사자신문조서는 별첨3 참고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가. 속기사의 속기록 작성

일반적으로 구술심리가 개최되면 속기사는 녹음과 동시에 속기록을 작성한다.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속기사는 심판정책과장의 결재를 받은 속기록 및 녹음파일을 심판이력에 등재한다.

나. 속기·녹음의 보관

구술심리조서가 작성된 경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녹음파일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심판사무관은 그 취지와 사유를 심판기록에 표기하여야 한다.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복사

심판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3-1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에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특§158) 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한다. 출석한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또는 답변의 취지 및 그 이유)를 진술하고, 심판장이 심문한다. 심판사무관은 구술심리조서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불출석을 기재한다.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구술심리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구술심리조서를 작성한다.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에 의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당사자 쌍방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행하고 불출석의 사실을 기재한 구술심리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각각 작성한다.

3 증인의 불출석

구술심리기일에 증인신문을 함께 행할 예정이었던 경우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구술심리조서만을 작성한다.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민소§299②, §367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허위진술을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232).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출석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신청한 측의 당사자가 출석하고 있는 때는 주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신문하게 한다. 반면, 증인신문을 신청한 측이 불출석이고 그 상대방이 출석하고 있는 때는 신청인 측이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기초하여 심판장이 증인신문을 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기회를 줄 수 있다(민소칙§90).

5 통역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특시칙§65②)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소§143).

통역인은 심판장이 지정한다(민소§333, §335).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에서 심판장은 통역인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선서하도록 한다. 통역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다.

이후 심판장은 통역인을 통하여 증인에게 주의 사항을 알리고 선서하도록 한다. 통역인의 여비, 통역에 필요한 비용 등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소§116).

◆ 표 5-1. 통역인의 지정 ◆

※ 통역인의 지정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감정인은 심판장이 지정하므로 통역인은 심판장이 지정하여야 하나, 실무에서 심판장이 전문성 있는 통역인을 찾아 지정하기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정한 통역인을 찾아 심판장이 그 통역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자 통역인을 데려와 통역하도록 한다.

◆ 표 5-2. 통역이 필요한 증인의 증인신문 시나리오(예시) ◆

- (심판장) 구술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통역인과 증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통역인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통역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인) 제 이름은 000입니다...(생략)
- (심판장)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통역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청구대리인) 예.
- (피청구인) 예.
- (심판장) 통역인부터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후에 허위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27조에 의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서에 서명한다]
- (심판장) 다음은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해 주십시오.
- (통역인) [통역]
- (증인) 제 이름은 0000 00000입니다.(이하생략)

6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으로 하여금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이 경우의 당사자의 진술은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당사자신문 절차는 증인신문 절차를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신문도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구술심리기일에 행하여진다. 심판사무관은 당사자신문이 끝나면 당사자신문조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10 서식)를 작성한다.

◆ 표 5-3. 당사자신문의 법적성격 ◆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본인은 소송의 주체이지 증거조사의 객체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證據方法)으로 하여, 마치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는 증거조사를 당사자신문이라 한다.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의 당사자는 증거조사의 객체로서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하는 진술인 소송자료와

는 구별되며, 당사자신문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진술하는 것(특§147③, 민소§136①)은 주장의 보충이지 당사자신문은 아니다. 당사자신문은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민소§372 단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 등도 이 절차로 신문한다(민소§372, §64).

신문의 시기는 증인신문의 경우처럼 구술심리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행한다(민소§293).

당사자신문 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32제1항에 따라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과태료 부과)를 가하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도1168 판결) 그러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신문에서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민소§451).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구술심리 중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일부 취하하는 경우 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동의 여부를 질의한다. 피청구인이 동의하면, 심판장은 청구취지가 일부 취하되었음을 확인하고 심판사무관에게 조서에 기재할 것을 명한다(또는 현장에서 바로 심판청구 일부 취하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심판사무관은 조서에 청구취지가 일부취하 되었음을 기재한다. 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사무관은 청구취지일부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심심판관과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직권으로 생성한다. 방식담당자는 방식화면에서 청구취지 일부취하서를 수리하고, 심판이력에서 청구의 취지를 일부변경 후 등록과장에게 심판청구일부취하통보서를 발송한다.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청구취지일부취하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11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 방식담당자는 구술심리기일에 이미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려한다.

※ 심판청구 일부취하서, 청구취지일부취하서는 별첨3 참고

8

참가인

참가인은 심판에 있어서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및 기타 일체의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특§155②④, 실§33, 디§143②④, 상§142②④). 참가인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행할 경우, 심판장은 참가인에게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특§154④). 구술심리 진행에 있어서 참가인은 당사자와 동등하게 진술할 수 있고,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심리에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주장이 다를 경우, 심판장은 심판사무관이 이를 구분하여 조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다.

가. 참가의 종류

(1) 당사자참가(특허법 제155조①)

특§139①(실§33, 디§125②, 상§124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청구인으로서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예: 이해관계인이 2이상인 경우)가 이해관계인 중 한 사람의 심판청구에 참가하여 공동심판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참가이다.

(2) 보조참가(특허법 제155조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특§155③, 실§33, 디§143③, 상§142③). 이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예: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당사자 일방을 도와서 심판절차를 보조하는 것이다.

※ 참가인 → 심판편람 제5편 제6장 참조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당사자계 사건 중 침해소송 관련 사건, 신속심판신청서가 제출된 사건 등 신속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정정청구 제외),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5개월 또는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5개월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심판사 무취급규정§31의2).

10

병합사건

복수의 심판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구술심리,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행할 경우 동일 절차 및 심리를 동일한 기일에 진행한다. 병합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행할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를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심판장은 같은 서증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부호에 가지부호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예: “갑가”, “갑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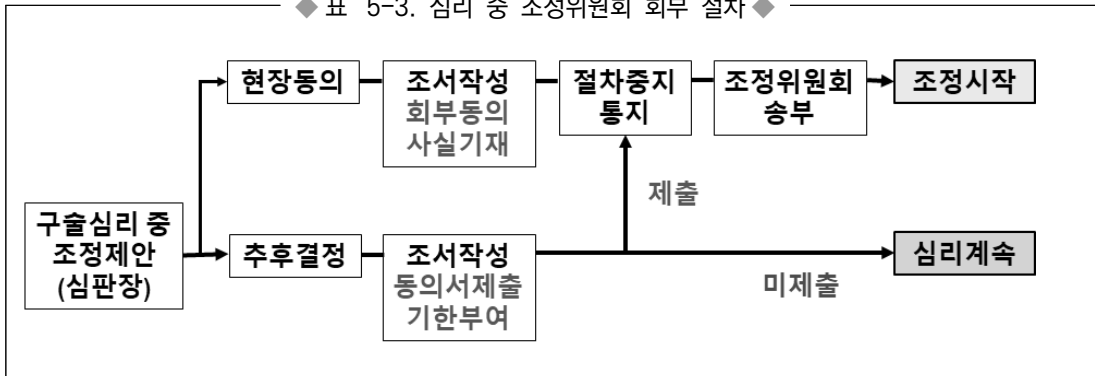
11

구술심리에서의 심판-조정 연계

산업재산권 분쟁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되므로, 심판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때가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침해소송과 연관된 심판사건의 심리 중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심판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성립시에는 심판사건을 종결, 불성립시에는 신속심판으로 진행되는 심판 - 조정연계제도를 '21년 11월 도입하였다.

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조정이 유리한지 여부는 사건별로 심판장이 판단하게 되며, 주로 구술심리 중에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한다.

◆ 표 5-3. 심리 중 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



심판장이 구술심리 중에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가 현장동의하는 경우, 심판사무관은 양 당사자의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며 구술심리 폐정 후에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37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3-1 서식)를 양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제출받는다. 심판장은 동의서 파일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38호 서식)에 첨부하여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고,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한다.

협의 필요 등의 이유로 현장동의가 어려운 경우에 심판장은 조정회부 동의서 제출 기한을 부여하며, 심판사무관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출 기한 내 양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계속 진행하며, 제출 기한 내 양 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심판장은 현장 동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송부하며, 심판절차를 중지한다.

12 검 증

검증이란 심판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형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이다. 그 대상을 검증물이라 하며 토지, 가옥,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검증에 특별히 학식·경험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민소 §365). 서증과 검증을 비교하여 보면 서증은 문자나 부호에 의하여 기재된 문서의 내용(사상)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이고, 검증은 검증물의 존재사실이나 성상, 현상 등 주로 외형자체에 대한 인식을 증거자료로 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증은 심판정 내에서의 검증과 심판정외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증이 있다. 검증은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실시한다.

심판정내 검증은 검증의 신청이 있고 특허심판원 심판정에서 검증물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정의검증의 요령에 따라 검증한다. 그 검증이 구술심리나 증인신문과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별지로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 검증물의 표시, 검증물의 목적, 당사자의 지시설명, 검증의 경위,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여도 된다.

※ 심판정외 검증(현장검증)에 관한 사항은 심판편람 제9편 제5장 참조

13

심판정 외 현장검증 장소 등에서 개최하는 구술심리

검증물이 심판정 외에 있어 심판부가 현장에 가서 검증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장 검증 장소에서 구술심리가 개최되기도 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당사자는 심판사건 신청서(특시칙 별지 3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1 서식)의 신청구분 중 ‘현장검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장검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현장검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현장검증비용의 예납을 명한다.

현장검증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1-4 서식)로 구술심리 기일 및 장소도 통지하여야 하며, 구술심리 장소 지정 시 당사자 및 검증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가급적 발언, 속기 및 녹음이 원활하게 가능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검증에서 개최하는 구술심리에서 증인신문 등이 수반되는 경우, 참석자 및 증인을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사무관 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심판사무관은 사전에 현장검증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심판부에 제출한다. 현장에서 채증이 이루어지므로, 현장검증 장소에 참석 시에 사진촬영, 녹취 등이 가능한 카메라 장비 및 녹음기를 휴대하도록 한다. 심판사무관은 검증장소로 이동한 후 불비한 점이 없는지를 구술심리 전 사전 점검한 후, 구술심리 참석자의 신분 확인을 실시한다.

현장검증 장소에서 구술심리도 개최하는 경우, 구술심리 조서와 현장검증 조서를 함께 작성하며, 증인신문이 수반될 경우 증인신문 조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구술심리 조서 및 증인신문 조서는 심판사무관이 작성하나, 현장검증 조서는 심판관이 작성할 수도 있다.

14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전 심판정과 서울 심판정 간의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상심판정의 설치가 서울에 한정되어 있고,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비상 상황에서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인터넷(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를 '21.8월 도입하였다.

가. 구술심리 개최(변경) 신청 및 개최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구술심리와 동일하게 구술심리신청서(특시칙 별지 33호 서식)을 이용하되, 신청의 이유란에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를 신청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되고, 일반 또는 원격영상으로 개최예정인 구술심리를 인터넷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일변경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25호 서식)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의 경우, 심판정에 설치된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존 원격 영상구술심리와 달리 당사자가 자택 또는 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노트북, 웹카메라, 헤드셋을 자체 준비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영상회의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구술심리 내용 중에 비밀에 관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참석에 동의한 공개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의 판단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나. 구술심리 사전 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심판정책과에서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온나라 영상회의)의 접속방법 및 사용매뉴얼을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방법으로 기일 2~3일 전에 안내하며, 필요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테스트도 가능하다.

다. 구술심리 진행

개최 당일 심판사무관이 영상회의실을 개설한 후, 참석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코드번호를 발송하면, 참석자는 해당 영상회의 시스템에 코드번호를 입력한 후 심판정으로 입장할 수 있다. 참석자는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없는 조

용한 공간에서 접속하여야 하고, 심판정 및 구술심리 진행에 관하여는 심판장의 허락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심판사무관의 요청에 따라, 참석자 본인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을 영상회의 화면 상에서 육성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진술 내용은 녹음, 녹화된다.

그 외 구술심리 진행, 속기 등에 관한 사항은 원격 영상 구술심리와 동일하다.

15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심판사건 설명회

특허심판원에서는 전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설명회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설명회를 '20.5월 도입하였다.

* 면담, 설명회로 이원화된 심판관-대리인 간의 의사소통절차를 심판사건 설명회로 일원화('21.12월)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설명회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심판부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사건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술심리와 같고, 전화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장소의 구애없이 당사자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취지가 있으나, 자유로운 형식 하에 이루어져 변론방식(민소법 제4장제1절 변론)을 엄격히 지킬 수 없으므로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가 구술심리조서와 같은 증명력을 지니지는 못한다(민소§158)

심판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설명회를 녹취할 수 있고, 필요시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최 후에는 설명회 결과보고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2-13호 서식, 구술심리 매뉴얼 별지 2-12 서식)로 작성하여 심판기록물로 등재하며,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화하여 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당사자 신청이나 심판부의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관은 사건의 성숙여부, 심결시기, 전화 또는 영상으로 개최 필요성, 타 제도(영상구술심리 등) 이용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심판관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명회의 개최 여부 및 일정을 당사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전화를 이용한 설명회 개최시 심판사무관이 전화연결(그룹콜)

을 실시하므로, 심판부에서는 설명회 일정을 심판정책과에도 함께 통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일방당사자와 개최하는 설명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자간 전화연결(그룹콜)이 필요한 설명회시 심판사무관은 개최 전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심판부에 제출하고, 개최일에 심판관과 함께 심판사건 설명회장으로 이동하여 참석자 간 전화 연결(그룹콜)을 지원한다.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설명회 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실을 개설하고 참석대상자에게 해당 회의실 입장 코드번호를 문자로 송부하는 등 심판부, 속기사 및 당사자가 원활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

다자간 전화 심판사건 설명회 시나리오

[개정 전]

[심판사무관은 심판관과 함께 심판사건 설명회장으로 이동하거나, 심판관이 설명회장으로 이동 전까지 대기한다. 심판관이 설명회장에 참석한 후 설명회장 전화기로 전화 설명회 참석 예정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작한다.]

(심판사무관) [설명회장 전화기의 [회의] 버튼을 누른 후 각 참석자 전화 연결을 하며, 참석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2020당 0000 사건의 청구인 측 대리인 000변리사님이신가요?

(청구대리인) 예, 맞습니다.

(심판사무관) 연결되신 대리인께서는 다른 참석자 연결 전까지 끊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 버튼을 누른 후 다른 참석자에게 전화 연결 후 [회의] 버튼을 누른다.]

2020당 0000 사건의 피청구인이신가요?

(피청구인) 예, 맞습니다.

(심판사무관) 지금 모든 참석자가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전화 설명회의 내용은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기의 [녹취]버튼을 누른 후 심판관에게 수화기를 전달한다]

1. 개시선언

(심판관) 지금부터 (연도) 당0000, 특허 제000000호 무효심판 사건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주의사항 안내

(심판관) 참석자 확인에 앞서, 전화 설명회 진행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당사자 및 대리인께서는 심판관의 지휘에 따라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 시에는 수화기에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며, 발언하시기에 앞서 발언자의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셔야 합니다.

셋째, 심판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발언의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심판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전화연결 해제를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설명회 도중 전화가 끊어질 경우, 심판부에서 다시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심판부에 전화주지 마시고, 재연결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자 확인

(심판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청구대리인)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심판장)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측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피청구대리인) 저는 대리인 변리사 000입니다.

※ 전화 설명회 중 참석자의 전화 연결이 끊어졌을 때 조치사항

(심판관) [다른 참석자에게 대기 요청을 한다]

질문 드렸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청구인의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참석자분들은 청구인의 전화가 다시 연결될 때까지 끊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앞에 심판사무관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을 참조하여, 연결이 끊어진 참석자에게 [회의]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전화를 다시 연결하도록 한다.]

2020당 0000 사건의 청구인 되십니까? 전화가 끊어져서 다시 연락 드렸습니다.

(청구인) 예, 맞습니다. 아까 부득이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판관) [전화기의 [회의] 버튼을 눌러 다자간 통화를 다시 연결하도록 한다.]

그러면 모든 참석자분들께서 다시 연결되었으므로, 설명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전화가 끊어져서 답변받지 못한 사항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인측에서는 먼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진술을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예, 청구인 000입니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 1

2022 구술심리 매뉴얼

www.kipo.go.kr/ipt/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구술심리 관련 규정





1. 구술심리 일반

1. 구술심리의 개최	107
2. 구술심리기일의 지정·변경·취소	109
3. 구술심리의 진행	110
4.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113
5. 구술심리조서	116
6. 구술심리 녹음 및 속기록	118

2. 증인신문

7. 증거조사	120
8. 증인의 신청	120
9. 증인의 선서	122
10. 증인신문절차	123
11. 당사자신문	124
12. 증인에 관한 심판비용	125
13. 위증죄와 과태료	127

3. 기 타

14.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128
----------------------	-----

1

구술심리의 개최

특§154①, 특시칙§65①, 심판사무취급규정§39의2,39의3

특§154(심리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특시칙§65(구술심리) ①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39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1.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2. 삭제
3. 석명권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심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심판사무취급규정§39의3(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39의4(원격영상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상표·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 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

한 구술심리로 본다.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구술심리기일의 지정·변경·취소

특§154④, 심판사무취급규정§40~43

특§154(심리등)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사무취급규정§40(구술심리기일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부는 기일지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송달하여 구술심리기일은 통지하고, 쟁점이 될 심문사항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쟁점심문서(별지12-4호 서식)를 통지할 수 있다

심판사무취급규정§41(구술심리기일의 변경)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2(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2의2(구술심리기일의 취소)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을 송달하여 통지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3(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3-2호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②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별지 제13-3호 서식)를 통지한다.

3 구술심리의 진행

특§154③, 158, 160, 민소§143, 특시칙§65②,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2

(1) 구술심리의 공개

특§154(심리등)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사무취급규정§39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대리인 적격

특§3(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5(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

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특§12(「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변리사법§2(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21(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민소§87(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소§88(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불출석

특§158(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4) 심리 병합·분리

특§160(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5) 구술심리에서 국어 사용

민소§143(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시칙§65(구술심리) ②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심판정의 질서유지

특§154(심리등)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입 명령

2. 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 징계 요청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4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심판사무취급규정§31의2

심판사무취급규정§31의2(신속심판) 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특허법 제164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3.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4의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 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마.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사건
8.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 사실이 접수된 날 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 5개월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
 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 ⑤ 삭제
-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
 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5

구술심리조서

특§154⑤⑥⑦, 민소§153,154,156~160, 심판사무취급규정§28의2,45의3

(1) 구술심리조서 작성 및 기명날인

특§154(심리등)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 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서의 기재사항

민소§153(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민소§154(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민소§156(서면 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민소§157(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민소§158(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소§159(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소§160(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소§152(변론조서의 작성) ①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민소§155(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서 작성자와 기한

심판사무취급규정§28의2(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① 특허청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5의3(구술심리조서의 작성)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조서(필요시 증인·당사자신문 조서를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6

구술심리 녹음 및 속기록

심판사무취급규정§44,45,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 5, 7

심판사무취급규정§44(구술심리의 녹음 등)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심판사무취급규정§45(녹음테이프, 속기록의 보관 등)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테이프(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심판방식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심판방식심사관보는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심판방식심사관보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을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5(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 ① 구술심리조서가 작성된 경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심판방식심사관보는 그 취지와 사유를 심판기록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7(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증거조사

특§157, 민소§288~384

특§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준용규정(민사소송법 제3장 증거 §288~§384)

8

증인의 신청

특시칙§65의2, 심판사무취급규정§47,50~52

특시칙§65의2(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7(증인신문의 신청) ① 심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3(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3-2호 서식)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②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별지 제13-3호 서식)를 통지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50(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 심판관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51(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 서류의 부분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심판사무취급규정§52(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증인의 선서

민소§143②, 319~325, 333, 335, 338, 339

(1) 증인의 선서

민소§319(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민소§320(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민소§321(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민소§322(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민소§323(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민소§314(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소§324(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소§325(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통역·감정인의 선서

민소§143(통역)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소§333(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및 제321조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소§335(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민소§338(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민소§339(감정진술의 방식)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0 증인신문절차

(민소§327~330)

민소§327(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민소§328(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민소§329(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민소§330(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1 당사자신문

특§154⑧, 민소§367~373

특§154(심리등) ⑧ 심판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민소§367(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민소§368(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민소§369(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소§370(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소§371(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민소§372(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민소§373(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증인에 관한 심판비용

특§165②, 민소§116①②, 민소규§19①③, 심판사무취급규정§15~17, 49

(1) 증인의 여비 예납

특§165(심판비용)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민소§116(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소규§19(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심판사무취급규정§15(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
2.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심판사무취급규정§16(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심판사무취급규정§17(예납금의 납부)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49(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심판관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 심판관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비용 등의 납부 및 관리 등에 대한 절차는 제4장의 절차에 의한다.

13

위증죄와 과태료 (2017.9.22. 시행)

특§227, 232, 민소§299②③, 심판사무취급규정§53, 54

특§227(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23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민소§299(소명의 방법)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소§320(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민소§321(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민소§322(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민소§367(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53(불출석의 신고) 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증인이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3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심판사무취급규정§54(과태료 등)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특허법 제232조·동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별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14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288~§384)

민사소송법 제3장 증거

제1절 총 칙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②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몰취)한다.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증인신문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①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법정)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2조(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절 감 정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및 제321조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 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서 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 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제354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 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보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하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는 필적 또는 인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검 증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1.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1-1 심판사건 신청서(구술심리)	143
1-2 서면심리통지서	144
1-3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145
1-4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146
1-5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148
1-6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149
1-7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150
1-8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151
1-9 구술심리진술요지서	152
1-10 구술심리조서	153
1-11 속기록	155
1-12 심판청구 일부취하서	156
1-13 청구취지일부취하서	157

2. 증인신문 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2-1 심판사건 신청서(증인)	158
2-2 증인진술서	159
2-3 증인출석요구서	160
2-4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161
2-5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	162
2-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163
2-7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165

CONTENTS 별첨2 목차

2-8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	166
2-9 증인신문조서	167
2-10 당사자신문조서	168
2-11 선서서	169
2-12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170

3. 기타서식

3-1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171
3-2 열람복사신청서	172

(별지 1-1 서식)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

심판사건 신청서·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신청구분】 ☐ 심판관 제척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취소신청참가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신청의 이유】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특시칙\$65, 실시칙\$17, 디시칙\$77, 상시칙\$65



(별지 1-2 서식)

서면심리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 면 심 리 통 지 서

심 판 번 호 (연도) 당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특허법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5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1항, 상표법 제141조제1항)

20 . . .

심 판 장 ㉠

※ 특§154㉠, 실§33, 디§142㉠, 상§141㉠

(별지 1-3 서식)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20 . . . 자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추후 심판서류를 검토한 후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최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인

(별지 1-4 서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54조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3항, 상표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출석하시기 바라며, 구술심리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20 .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술심리 시 발표할 자료는 6부(영상심리시는 각자 지참)를 출력하고, USB에 저장하여 참석(E-mail 불가)

일 시

장 소

개 최 방 법 일반심리, 원격 영상심리, 인터넷 영상심리 중 택1

2. 구술심리에서 모든 쟁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서류를 상기 제출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변리사의 (복)대리인 선임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2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출석 후 개정 전에는 심판정 앞 대기석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온라인심리의 경우, 개정 30분 전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양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에서 진술요지를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께서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서양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특허법 제154조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2항, 상표법 제141조제2항), 구술심리조서에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 . . .

심 판 장

㉠

※ 특§154④, 실§33, 디§142③, 상§141③



(별지 1-5 서식)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20 . . . 개최되는 구술심리의 주요 심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 . .까지 진술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사항)

20 . . .

심 판 장

㉠

(별지 1-6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서류명】 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신청사유】 ☐ 양 당사자 합의 ☐ 현저한 사유 (개요 : ex. 법원기일 참석)

【희망기간】

【취지】 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인)

【첨부서류】 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 【신청사유】란

당사자계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기일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합의에 체크하고, 결정계 또는 당사자계 사건에서 일방에게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사유에 체크하고 개요를 기재함. 예) 개요 : 법원 기일 참석, 예비군 훈련 등

2. 【희망기간】란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희망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3. 【첨부서류】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고 합의 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상대방의 FAX로 받은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여도 무방)

-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되 선임된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가 현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특§154④, 디§142③, 상§141③



(별지 1-7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20 . . . : 의 구술심리기일이 20 . . . : 로 변경되었으니 그 일시에 에 출석하시기 바라며, 구술심리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20 .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등 : 특허법 제1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3항, 상표법 제141조제3항)

일 시

장 소

개 최 방 법 일반심리, 원격 영상심리, 인터넷 영상심리 중 택1

2. 개정 2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개정 전에는 심판정 앞 대기석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온라인심리의 경우, 개정 30분 전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양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에서 진술요지를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20

심 판 장

인

※ 특허§154④, 디§142③, 상§141③

(별지 1-8 서식)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 : 의 구술심리기일 지정을 취소합니다.

20 . . .

심 판 장 ㉠

※ 특§154④ (수신 : 당사자·참가인), 디§142③, 상§141③

(별지 1-9 서식)

구술심리진술요지서

구술심리진술요지서

【서류명】 구술심리진술요지서

【권리구분】

(【제출처】)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000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진술내용】

【첨부물건의 목록】

【취지】 위와 같이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1-10 서식)

구술심리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 술 심 리 조 서

심 판 번 호

일 시 : 20

사건의 표시

심 판 장 심판관

장 소:

심판관

심판관

공개여부:

심 판 사 무 관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피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실시함)

I.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

2.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II.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등

1. 사건의 쟁점

○

2. 증거인부

○

3. 심판장 석명사항

○

III. 심판장 지시사항

1. 조서기재사항

○

2. 고지사항

○

심 판 장	㉠
심 판 사 무 관	㉠

※ 특§154㉤⑥, 민소§153, §154, §156~§160, 디§142㉤⑤, 상§141㉤⑤

(별지 1-11 서식)

속기록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속 기 록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기 일

장 소

속 기 내 용

심 판 관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피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심 판 사 무 관

속 기 자

총 면 수

비 고

특허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속 기 자 :

㉠

(별지 1-12 서식)

심판청구 일부취하서

취하(포기)서

(앞쪽)

-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취하 ☐ 취소신청 취하
☐ 취소신청 일부취하 ☐ 취소신청참가 취하
☐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PCT 국제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취하(포기)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별지 1-13 서식)
청구취지일부취하서

심판사무관	주심심판관	심판장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청구취지일부취하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청구는 20 구술심리 중에 피청구인의 동의하에 일부취하되었습니다.

일부취하내용

20

심 판 장

㉠

※ 특§161, 특시칙§69(수신 : 상대방), 디§149, 상§148



(별지 2-1 서식)

증인신청서

심판사건 신청서·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신청구분】 ☐ 심판관 제척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취소신청참가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증인신문사항 1통

※ 특시칙\$65, 실시칙\$17, 디시칙\$77, 상시칙\$65

(별지 2-2 서식)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증인의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20 . . .

진술인

(날인 또는 서명)

※ 증인진술서 작성요령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힌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심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 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 한다.



(별지 2-3 서식)

증인출석요구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증 인 성명

주소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하오니 20 . . . : 에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제2항, 상
표법 제144조제2항)

2.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2조, 실용신안법 제52조, 디자인보호법 제229조, 상표법 제
237조)

신문사항요지

20 . . .

심 판 장 ㉠

※ 특허§157②, 실§33, 디§145②, 상§144②, 민소§303, §309(수신 : 증인)

※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 소환시 준용

(별지 2-4 서식)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당

사건의 표시

증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지정된 20 . . .의 증인신문
기일을 20 . . . : 로 변경하오니 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제2항, 상
표법 제14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03조, 제309조)

2.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2조, 실용신안법 제52조, 디자인보호법 제229조, 상표법 제
237조)

신문사항요지

20 . . .

심 판 장 ㉠

주의 : 출석할 때에는 증인 여비 등이 지급되오니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 소환시 준용



(별지 2-5 서식)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인출석요구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증	인	성명
		주소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 에 지정된 증인의 신문을 취소합니다.

20 . . .

심 판 장 ①

※ 특§157②, 실§33, 디§145②, 상§144②, 민소§303, §309(수신 : 증인)

※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 소환시 준용

(별지 2-6 서식)

심판비용예납요구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비용예납요구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증인 ○○○의 신문(현장검증 등) 비용 등 예납금명세에 따른 예납금 원을 20 . . . 까지 지정된 예납인의 이름으로 아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은행 : 농협 계좌번호 : 676-01-011430 예금주 : 특허청(심판원예납금)
예납금명세

20 . . .

심 판 장 ⑨

※ 특§165②, 민소§116, 디§153②, 상§152②

비 용 계 산 서

심 판 번 호 :

비용항목	금액(원)	내역	비고

총계 : 원

(별지 2-7 서식)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명
 주소
대 리 인 성명
 주소

()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FAX(042-472-3474)를 통하여 통장사본(예납인 본인의 실명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위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관계법령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20 . . .

특허심판원장 인

특 허 심 판 원 장

영 수 증

심 판 번 호 (연도) 당(원)

사건의 표시 특허 제000000호 『 』의 무효

위 건에 대한 심판비용액예납금 중 잔액 금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 . . (영수일자)

영 수 인 성명
 주소

특허심판원장 귀하

(별지 2-8 서식)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

포 기 각 서

심 판 번 호 :

사건의 표시 :

본인은 상기 심판 사건의 구술심리와 관련하여 당일 신청한 증인으로 20 . . . 증
인 출석으로 인한 비용(여비) 청구를 포기합니다.

20

증 인

성 명 ①인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2-9 서식)

증인신문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 인 신 문 조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심 판 장 ㉠
심 판 사 무 관 ㉠

※ 특§157②, 실§33, 디§145②, 상§144②, 민소§303, §309(수신 : 증인)

※ 감정인 신문 조서 작성시 준용

(별지 2-10 서식)

당사자신문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당사자신문조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피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당 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주 소

※ 심판장은 본인(당사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심 판 장 ①

심 판 사 무 관 ①

※ 특§157②, 실§33, 디§145②, 상§144②, 민소§303, §309(수신 : 증인)

※ 감정인 신문 조서 작성시 준용

(별지 2-11 서식)

선서서

선 서 서

심 판 번 호 :

사건의 표시 :

(※ 증인일 때)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감정인일 때)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통역인일 때)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당사자일 때)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진술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20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 당사자

성 명 (인/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 특§227, 특§232, 실§47, 실§52, 디§221, 디§229, 상§232, 상§237, 민소§321, 민소§338

(별지 2-12 서식)

설명회 결과보고서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개 최 일 시

장 소

공 개 여 부

(참여)심판관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피 청 구 인

(불)출석

대 리 인

(불)출석

주요 내용은 첨부된 속기록 참조

심판관

(인)

※ 첨부 : 심판사건 설명회 속기록

(별지 3-1 서식)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사건의 표시(심판번호)		특허 제00000000호 무효심판(2021당0000)
사 건 과 의 관 계		☐ 청구인 / ☐ 피청구인
심 판 기 본 정 보	(피)청구인	성명: (전화 010-0000-0000)
	대리인	성명: (전화 010-0000-0000)
심판부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동의 여부		☐ 동의 / ☐ 미동의 *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판합의체 전부 또는 일부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49조의3②)
청구인/피청구인은 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서 등 심판 기록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열람, 송부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피청구인 : (인)		

(별지 3-2 서식)

열람복사신청서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 【신청 구분】
- | | |
|--|--|
|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문서) |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 ☐ 특허(등록)증 재발급 |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 ☐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 ☐ 등록원부 발급 |
| ☐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 ☐ 자료열람 |
| ☐ 자료복사 | ☐ 서류등본(초본) 발급 |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신청이유】)

(【수취방법】)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합니다)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 특§216 실§44, 디§206, 상§215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1. 특허 무효심판

1.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	177
2.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정정청구 다툼이 있음)	179
3.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정정청구 다툼이 없음)	181
4.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3항	183
5. 무효심판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84
6. 무효심판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85
7. 정정무효심판 - 특허법 제136조 제3, 4, 5항	186

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187
2.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기술 여부	189
3.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특허발명과 구성차이	190
4.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 및 특정	192
5. 권리범위확인심판 - 구성요소 결여, 균등	193

3. 상표 취소심판

1.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 2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 8호)	194
2.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95
3. 상표등록무효(취소)심판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무효)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취소)	196

CONTENTS

별첨3 목차

4. 상표 무효심판

1. 무효심판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197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2. 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99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 9, 11 내지 13호	200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 9 내지 12호)	

5. 디자인 무효심판

1.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201
2.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3

6. 상표·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204
2.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205

7. 기타 기재례

1. 당사자 불출석	206
2. 병합된 심판사건	207
3. 영상구술심리 심판사건	209
4. 증인신문조서	211
5. 당사자신문조서	213
* 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215

1

특허 무효심판

예 1-1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지 여부

나. 증거인부(갑 제1 내지 11호증)

- 갑 제0 및 0호증 부지하고 갑 제0호증 입증취지 부인하고 나머지는 성립을 인정함



3. 조서 기재사항

- * 쟁점으로 다루지는 기술에 대해 명백한 정의등 심판부 및 양당사들의 요청에 의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함(요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청구인이 '00. 0. 0.자 의견서에 제출한 갑 제0 증은 철회함.

4. 심판부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술심리 당일(0월 0일) 심리 종결하며, 0월 00일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1-2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정정청구 다툼이 있음)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정정청구 관련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는 부적법함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해,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는 적법함
-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정정발명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 이 사건 제1 및 제9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나타난 'B'을 'C'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교대상발명 2의 '무선으로'라는 기재로부터 C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 피청구인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함

3. 심판장 고지사항

- 청구인은 C 방식으로 OO기계를 제어하는 것에 관련된 선행기술이 있다면 2000. 00. 00까지 이를 제출할 것

예 1-3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정정청구 다툼이 없음)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4항 정정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 가능하며 비교대상들에 공지된 기술임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4항 정정고안의 구성은 비교대상 고안들에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 불가능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특히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A(110)'이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 (갑 제1 내지 5호증)

- 갑 제1 내지 5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기존 제출된 갑 제5, 6, 12 및 13호증을 각각 청구인 측 참고자료 1, 2, 3, 4로 변경함
 - 기존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 철회함
 - 기존 제출된 갑 제7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변경
 - 기존 제출된 을 제1호증을 피청구인 측 참고자료 1로 변경함



3. 조서 기재사항

- * 쟁점으로 다루지는 기술에 대해 명백한 정의등 심판부 및 양당사들의 요청에 의해 기재하여할 사항을 기재함(요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이 심판사건의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4. 심판장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술심리 당일(0월 00일) 심리를 종결하며, 0월 00일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1-4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3항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2000. 0. 00.자 정정청구 및 이 사건 특허 제00000000호의 2000정000에 의한 정정은 독립특허요건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 제1103429호의 2015정102에 의한 정정 및 이 사건 심판의 정정 청구는 독립특허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2000정000 정정심결의 무효 여부
 - 정정범위의 실질적 변경, 독립특허요건(확대된 선원, 진보성)

나. 증거인부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

- 갑 제11 및 12호증 부지하고 나머지는 성립 인정함
- 을 제1호증 성립 인정함

예 1-5

무효심판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받은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정상적인 출원임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인지 여부

나. 증거인부(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을 제1 내지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3. 심판부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술심리 당일(0월 00일) 심리 종결하며, 0월 00일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1-6

무효심판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갖고 있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및 2호, 제3항 소정의 기재 불비 무효사유가 없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갖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갖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구술심리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0월 00일(목) 이내에 심결문을 송부 할 예정임

예 1-7

정정무효심판 - 특허법 제136조 제3, 4, 5항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이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독립 특허요건에 위배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정정발명은 기술 구성이나 그 결합 작용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정정사항 3에 의해 신규사항 추가, 실질적 변경, 기재불비에 의한 독립특허요건의 위배 사유가 발생되어, 이 사건 정정이 불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 (갑 제1호증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

-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에 대해 성립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함
- 을 제1호증에 대해 성립 인정함

3. 조서 기재사항

- 정정사항 3의 A는 B에 의해 회전 가능뿐 B의 분리여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심판장 지시사항

- 2주일 이내에 심결할 것을 예고함

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예 2-1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4, 5 및 7항 고안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을 제1호증)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임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실시되었는지 여부
 - '확인대상고안의 설계도면(을 제3호증)'의 작성 시점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 (갑 제1 내지 5호증)

- 갑 제1 내지 5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기존 제출된 갑 제9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변경
 - 기존 제출된 갑 제5, 6, 7 및 8호증을 청구인 측 참고자료 1, 2, 3, 4로 변경함



- 을 제3증을 성립을 부인하고 나머지의 증거의 성립은 인정함
 - 기존 제출된 을 제13 및 14호증을 을 제3 및 4호증으로 변경
 - 기존 제출된 을 제3 내지 12호증을 피청구인 측 참고자료 1 내지 10으로 변경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술심리 당일(0월 00일) 심리를 종결하며, 0월 00일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2-2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기술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및 7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완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6 및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함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및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및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6 및 제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결여되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 갑 제1 내지 7호증 성립 인정하고, 입증취지 부인함
- 을 제1 내지 3호증 성립 인정하고, 을 제4 및 5호증 부지함

3. 심판부 고지사항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0월 00일까지 제출할 것
- 이 사건 심판청구는 0월 말에 심리종결할 예정임

예 2-3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특허발명과 구성차이

1. 증거정리(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및 참고자료)

- 피청구인들은 갑 제1 내지 9호증 모두에 대해 성립인정함
- 청구인은 을 제1 내지 6호증 모두에 대해 성립인정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함
- 피청구인 1(A)의 실시증거는 갑 제3 내지 5호증임
- 실시발명은 갑 제5호증의 사진속의 물건임(청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청구인

- 참고자료에 피청구인 2(B)의 등록번호(제10-0000000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1의 카탈로그 사진(갑 제4호증)을 참고하면 피청구인들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 피청구인 1은 을 제6호증(제30-0000000호 디자인등록 공보)을 실시하는 것임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다. 사건의 쟁점

- 피청구인 2가 실시발명을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심판부 고지사항

- 오늘(0월 00일), 심리 종결하고 다음주 중에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2-4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 및 특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이 2000. 0. 00.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청구인의 실시제품(참고자료 1)으로 바로 잡은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님
- 청구인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2017. 6. 30.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것임
- 확인대상발명은 청구인의 실시제품(참고자료 1)과 다름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00. 0. 00.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및 특정 여부

나. 증거인부(갑 제1 내지 5호증)

- 갑 제1 내지 5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예 2-5

권리범위확인심판 - 구성요소 결여, 균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A(43a)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A(43a)과 확인대상발명의 B(148)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으로 양 구성은 균등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A(43a)과 확인대상발명의 B(148)이 균등한지 여부

나. 증거인부(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갑 제1 내지 5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3. 심판부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술심리 당일(0월 0일) 심리 종결하며, 0월 00일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3 상표 취소심판

예 3-1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 2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 8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심판장의 고지사항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의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겠으며,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2000년 0월 00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예 3-2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인 'A'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심판부 석명사항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심판부 석명사항

-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고, 또한 피청구인의 주요 생산품이 무엇이고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함께 제출할 것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후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추가 자료는 0월 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함

예 3-3

상표등록무효(취소)심판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무효)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취소)

* 2016. 2. 29. 전부 개정된 상표법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를 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전환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2016. 9. 1. 이후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하는 심판은 무효심판 청구 대상임을 유의할 것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상표 무효심판

예 4-1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함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수요자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화장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하고 관념할 것임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인 'OOO'에 대하여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석명사항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심판부 석명사항

- 피청구인이 갑 제41호증 내지 제44호증과 관련하여 ‘C’ 라는 용어가 실제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을 부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은 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것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후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석명사항과 추가 주장할 사항과 증거자료는 00월0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고지함

예 4-2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A’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될수 없으며,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후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추가 자료는 0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함

예 4-3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 9, 11 내지 13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 9 내지 12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도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사용/등록표장의 알려진 정도에 대한 증명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3. 심판장의 고지사항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의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겠으며,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2주 후인 2000년 0월 00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년 0월 중 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5

디자인 무효심판

예 5-1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 요건을 위반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 또는 치환 가능하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전체적인 심미감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모양과 형상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출원주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추가 자료는 0월 0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건 무효심판은 0월 중에 심리를 종결할 것을 고지함

예 5-2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의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새로운 주장과 증거자료는 00월 00일 목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함

6

상표·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예 6-1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한 표장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후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주장 또는 보충할 서류는 0월 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월 말에 심결될 것을 예고함

예 6-2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심판장의 고지사항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2000년 0월 00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년 0월 중 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7

기타 기재례

예 7-1

당사자 불출석

*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빠트리지 말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양 당사자 불출석

예 7-2

병합된 심판사건

*특허에서 동일권리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가 가능함.

** 병합된 사건이 당사자주장, 쟁점 등이 동일한 경우는 각각의 심판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1개의 조서로 작성가능함.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00당0000〉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000당0000〉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2. 사건의 쟁점 및 증거인부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3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나. 증거인부

〈2000당0000〉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2000당0000〉

- 갑 제1 내지 7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성립을 인정함

3. 심판부 고지사항

- 이 사건 심판은 별도의 심리진행상황안내통지를 하지 않고, 0월중에 심결문을 통지할 예정임

예 7-3

영상구술심리 심판사건

* 영상구술심리가 개최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출석한 심판정을 구분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심 판 번 호	2000당0000	일 시	: 2000. 0. 00. 00:00
사 건 의 표 시	서비스표등록 제00000000호 무효		
심 판 장	심판관	장 소	: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심판부)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
주 심	심판관 심판관	공 개 여 부	: 공개
심 판 주 무 관			
청 구 인 성 명	000	(불)출석	
대 리 인 성 명	000	(불)출석	
피 청 구 인 성 명	000	(불)출석	
대 리 인 성 명	000	(불)출석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원격영상(또는 인터넷) 구술심리로 실시함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00. 0. 0.자 구술심리진술요지서를 프리젠테이션의 방법에 의하여 설명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심판장 고지사항

- 이후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주장 또는 보충할 서류는 '00년 0월 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월 말에 심결될 것을 예고함

예 7-4

증인신문조서

* 신문사항이 간단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조서에 기재할 것

〈심판번호 2000당0000의 구술심리 중 양측 동의하에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 측 참고인 ‘OOO’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신문을 실시함〉

※ 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음

가. 청구인의 주신문

(1) 증인은 직물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하였고 현재 00섬유의 대표이사가 맞습니까?

- 증인 : 예. 맞습니다.

(2) 증인은 ‘00섬유’에서 다른 업체와의 임제직 계약을 총괄하였지요?

- 증인 : 예.

(3) 증인은 이 사건 피청구인인 ‘***섬유(주)’를 알고 있습니까?

- 증인 : 예.

(4) 증인은 2000년 00월부터 2000년 00월까지 피청구인 회사와 임제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 예.

(5) 구두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 증인 : 예.

(... 생략)

나. 피청구인의 반대신문

(1) 증인은 직물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하였고, 2000년 2월부터 ‘OO섬유’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지금 이 사건 청구인인 ‘##섬유’와 임제직 계약이라든지 제직, 납품 등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 ##섬유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 생략)

다. 심판장의 질의사항

(1) 거래명세표를 보면, ‘**-00’번호 외에 다른 숫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거래명세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단일품목에 한해서 거래가 된 것입니까?

- 증인 : ‘**’은 전부 똑같이 써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번호가 디자인번호입니다.

예 7-5

당사자신문조서

※ 심판장은 본인(당사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음

1. 당사자 000에 대한 신문사항

가. 주신문(청구인측 신문)

- 증인은 박00와 어떤 관계인가요?
- 남편입니다.
- 증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박00 명의로 제출한 의견서가 이게 맞죠?
- 네, 맞습니다.
- 증인이 본 건 서비스표 ***의 실질적 소유자가 맞죠?
- 예, 맞습니다.
- 증인이 본 건 서비스표를 박00 명의로 출원 등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 편의상 했다는 것은 결국 집사람 명의를 차용해서 했다는 거네요?
- 차용이라기보다는 부부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 박00씨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한 건가요?
- 처인데 동의까지 있겠습니까?
- 자의적으로 한 것인가요?
- 네.
- 결국은 본 건 서비스표는 박00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 등록한 게 아니죠?
- 그 당시 사업자가 박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출원을 박00으로 한 겁니다.
-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박00씨가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 네.



나. 반대신문(피청구인측 신문)

- 증인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000 판매업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 박00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 예, 다 알고 있습니다.
- 증인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000를 000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인 박00이 반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구술심리 진행 과정에서 심판부에서 고지한 사항이 있다면 빠트린 것이 없는지 확인할 것
특히 구술심리 말미에 심판장 고지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함

○ 유의사항 2

당사자가 신규성 결여 주장을 하면서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진보성 결여)을 주장할 경우 유의
해서 조서에 기재할 것

○ 유의사항 3

무효심판에서 확대된 선원 주장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공지기술 주장을 함에 있어,
진보성 주장을 할 경우 유의해서 조서에 기재할 것

○ 유의사항 4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 특허발명과 정정발명을 구분해서 기재할 것

○ 유의사항 5

고안과 발명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 유의사항 6

상표와 서비스표를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 유의사항 7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동시에 청구될 경우 동일한 증거에 대해 서증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서에 기재시 유의할 것

○ 유의사항 8

동일권리 사건에 대해 동시에 구술심리를 진행한 경우, 사건이 병합되기 전이라면 건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유의사항 9

구술심리 중 당사자가 선서를 하고 심판부에서 당사자 신문을 한 경우,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유의사항 10

영상 구술심리 개최 시, 조서에 원격영상구술심리로 실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출석한 심판정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당사자가 출석한 심판정이 다른 경우 등) 출석한 심판정을 구분해서 기재할 것

○ 유의사항 11

증인신문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증인신문조서를 발송할 것

총괄 특허심판원장 이 재 우

편집 심 판 정 책 과 과 장 윤 병 수

사무관 황 현 주

주무관 윤 정 희

속기사 정 영 주

속기사 지 난 영

속기사 한 진 희

2022 구술심리 매뉴얼

발 행 일 : 2021. 12. 28.

발 행 인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TEL : (042) 481-5718

FAX : (042) 472-3474

주 소 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ISBN : 979-11-91116-93-9 13500

DOI : 10.8080/P9791191116939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